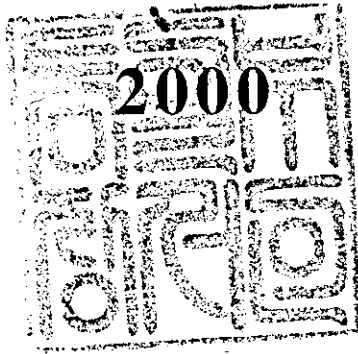


남북교역 실무안내



통 일 부

목 차

I. 남북교류협력 기반 형성	5
1. 남북교류협력관계의 정립	5
2. 남북교류협력 추진 경과	8
가. '94년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8
나. 국제무역질서 개편에 따른 남북교역 체제의 확립	10
다. 「국민의 정부」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11
라. 교역질서확립 및 절차간소화 조치	13
마. 베를린선언 및 남북공동선언	15
II. 남북교역의 현황	17
1. 물자교역 현황	17
가. 교역규모	17
나. 교역형태·품목	19
다. 위탁가공교역	21
2. 남북간 수송장비 운행 현황	23
가. 개 황	23
나. 남북간 선박운항	23

Ⅲ. 남북교역의 절차	26
1. 북한주민접촉 및 왕래의 처리	26
가. 북한주민접촉	26
나. 남북한 왕래	31
2. 남북교역 관련 처리	40
가. 남북교역의 개념	40
나. 남북교역의 당사자	41
다. 남북교역 대상물품의 구분	42
라. 남북교역 추진절차	43
마. 위탁가공교역	59
3. 남북협력기금 지원 제도	61
가. 지원대상	61
나. 지원조건 및 지원제외 대상	61
다. 지원절차	63
<참고자료>	
■ 남북교역의 약사	65
<부록 1>	
■ 남북교역 관련 서식	69
1. 북한주민접촉 및 북한방문 관련서식	71
2. 남북교역 및 수송장비운행 관련서식	85
3. 자금대출 신청서	98

<부록 2>

■ 남북교역 관련 법규	99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101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109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127
4.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130
5.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132
6.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139
7.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149
8.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151
9.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158
10.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165
11.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170
12. 남북협력기금법	183
13.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187
14.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193
15.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195
16.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215
17.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	223
18.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 관한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227
19. 남북교류·협력 공동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합의서	235

I. 남북교류협력 기반 형성

1. 남북교류협력관계의 정립

정부는 1988년 7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는 과거 냉전시대에서의 남북한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개방과 화해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시대의 개막을 천명한 것이었다.

이러한 「7·7선언」에서 “남북한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한간 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한다”고 밝힌 기본방침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해 10월에는 「남북경제개방조치」를 통해 남북한간 교역을 허용하고, 1989년 6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지침」을 제정하여 남북교류를 지원하는 등 「7·7선언」이 하나의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천될 수 있도록 관련조치들을 취해 나갔다. 이러한 조치들에 따라 부분적이지만 제3국을 통한 북한과의 교역이 합법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북한주민 접촉도 일부 성사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남북교류협력관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착·제도화시키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1990.8.1. 제정)을 비롯한 관련법령을 마련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이 우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1990년 9월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제1차 남북 고위급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됨으로써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특히 1991년 12월 제5차 회담에서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

고, 1992년 9월 제8차 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구체적 이행대책을 담은 부속합의서가 채택·발효되었다. 남북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민족 내부교류로서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하며, 남북 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고 밝힘으로써 남북한간 화해·협력시대의 실천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한간의 합의사항들은 북한이 팀스피리트훈련 등을 구실로 1992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던 분야별 남북공동위원회의 가동을 거부함에 따라 아직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7·7선언」과 그 후속조치들로 이어진 남북교류협력추진 기반조성 노력은 1993년 3월 북한의 갑작스러운 NPT 탈퇴선언으로 인해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림에 따라 1994년 11월 발표된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비롯한 실천적 후속조치들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협력 추진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정부는 1995년 4월 그동안 남북교역에 참여해온 업체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인증범위를 완화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남북교역품목통관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하였으며, 지방상공인의 남북교역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1995년 4월 부산 등 지방소재 한국무역협회 10개 지부에 남북교역 상담창구를 개설하였다.

또한 정부는 「대외무역법」 개정 및 남북한 교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1997년 4월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의 품목구분을 ‘포괄승인품목’과 ‘승인을 요하는품목’으로 분류하고, 기존의 자동승인품목(포괄승인품목)에 대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해 오던 반출·입 승인 제도의 폐지 및 전략물자 반출·입 절차의 신설 등을 포함한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 절차에관한고시」를 개정하였다.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경분리원칙으로 남북경제협력 적극추진」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였고, 4월에는 IMF구조금융 이후 침체되어 있는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남북경제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고, 6월에는 기계·장치·설비의 대북반출승인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을 대폭 축소(205개 → 178개)함으로써 반출입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역대상품목의 폭을 크게 넓혔다.

1999년 8월은 남북교역의 질서확립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피해 구제, 식물검역 및 생산자 보호 등이 필요한 일부품목에 대해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조정하고, 위탁가공 원부자재 및 그 생산품의 반출입에 대해서는 거래형태가 임대 또는 무상인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의 개별적인 승인없이도 반출입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99. 8. 16)

또한 10월에는 대북 투자 및 교역·위탁가공에 대한 기금지원을 위해 「남북 경제교류 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2000년에 들어서도 지원규모의 확대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2000년 6월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 졌으며 여기에서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 해 나가기로 하는 등 5개항의 「남북공동선언」을 채택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8월에는 남북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졌고, 7월부터 9월까지 3차에 걸친 남북장관급회담과 9월의 경의선 철도·도로연결 기공식,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 등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다방면에 걸쳐 급진전을 보게 되었다. 또한 그 동안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남북교류협력이 남북당국차원의 교류 협력과도 병행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남북교류협력 추진 경과

가. '94년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간의 「제네바 핵협상」 타결에 따른 대북 경수로 지원과 북한과 관련국간의 관계개선 등 한반도 주변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관계를 실질적 협력관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정부는 1994년 11월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고, 기업인 방북 승인과 협력사업(자) 승인 등 이를 구체화하는 후속조치를 시행하였다.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94.11.8)〉

□ 기본방향

- 북한 핵문제·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단계적·신축적으로 경협 확대
 - 북한 핵문제 해결 돌파구 마련에 따라 민간차원의 「기업인 방북」, 「위탁가공교역 활성화」, 「시범경협」 우선 허용
 -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 당국간 제도적 장치 마련 → 분야별 경협 본격 추진」 등으로 확대
- 남북경제교류·협력은 상호 보완과 호혜의 바탕에서 남북 모두의 실리를 도모하도록 추진
- 민간차원의 경제교류·협력이 법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

□ 조치내용

- 기업인 방북 등 남북 경제인사 상호방문 허용
 - 「시범사업」 협의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방북 허용
 -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방북은 사안별로 허용

- 민간차원에서 북한 경제인을 초청하여 투자설명회 개최 및 우리 산업현장 견학 등의 사업 추진 허용
- 위탁가공 교역 활성화
 -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기술자 방북 허용
 - 생산설비 운용·기술지도·품질관리 요원 등
 - 수시방북 절차 간소화 등 편의지원 방안 강구
 -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시설재 반출 허용
 - 대규모 또는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설비 등의 반출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
 - 기타 소규모 설비는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으로 반출
- ※ 시설재 반출을 위한 관련규정 보완(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시범적 경제협력사업 실시
 - 소규모 시범적 경제협력사업 실시
 - 북한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용품분야
 - 단기간내 경험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제조업 분야
 - 민족공동체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
 - 민간차원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허용
- ※ 향후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따른 추진방향
 - 남북 당국간의 협의를 거쳐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경제협력의 기본틀을 마련
 - 시범경협외의 경험과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분야별 경험 활성화
 - 장기적으로 SOC, 식량, 에너지의 남북연계공급 등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 구축

나. 국제무역질서 개편에 따른 남북교역 체제의 확립

1995년 들어와 WTO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정부는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족내부거래로서의 남북교역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남북교역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를 개정하였다.

즉 대외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자유화의 확대 등 대외무역의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남북교역이 국내시장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운데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남북교역 품목을 재조정하는 한편, 무상 반출입의 경우에는 교역품목의 구분과 관계없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 품목 구분을 그대로 남북교역 품목 구분으로 인정하여 왔으나, 동 고시의 개정으로 남북교역 교유의 교역대상품목 구분이 이루어짐으로써 남북교역의 독자성이 제고되었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개정('95.1.3)〉

- 북한으로부터의 자유로운 반입을 허용할 경우 수입자유화 등 대외시장 개방과 맞물려 국내시장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225개 품목을 반입제한승인품목으로 구분·관리
- 남북교역 품목을 국제품목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
- 자동승인품목이라도 무상 반출입의 경우에는 제한승인품목으로 분류,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 「국민의 정부」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적극 추진」을 대북정책의 3원칙으로 제시하고, 정경 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확대추진을 천명하였다.

정경분리원칙 적용은 첫째, 남북간 정치문제와 경협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지 않고 둘째, 민간주도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경협을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셋째, 정부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추진여건을 조성해 나간다는 의미이다.

이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순조롭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대결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차원의 경협이 정치적 문제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활성화되면 결국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1998년 4월 30일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98.4.30)〉

□ 기본방향

- 경협주체인 기업의 자율적 판단 존중, 민간주도의 경협 추진
- 정부는 경협질서 유지를 위한 과당경쟁 및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등 경협추진 여건 조성에 노력

□ 조치내용

○ 집축·방북

- 방북요건(초청장 등) 구비시, 승인을 원칙
- 방북을 제한해 온 대기업총수 및 경제단체장도 허용

- 수시방북제도 확대 시행
 - 협력사업자 승인시 적용 → 기업인 방북에 일반적으로 적용
- 기업인의 북한주민접촉 승인유효기간 연장(1년 → 3년)
- 승인처리기간 단축
 - 접촉 : 현행 20일 → 15일
 - 방북 : 현행 30일 → 20일
- 교역
 - 국내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포괄승인품목」의 지속적 확대
 - 위탁가공교역 촉진을 위한 생산설비의 반출제한 폐지
 - 국내유휴설비의 무상반출, 임대 허용
 - 1회 승인한도(현행 100만불)의 기준 폐지
- 협력사업
 - 투자규모제한 완전 폐지
 - 현행 500~1,000만불 규모
 - 투자제한업종의 Negative List화
 - 전략적으로 기술이전이 곤란한 분야
 - ▷ 신소재, 전자장비, 전기통신 및 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공전자공학 등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 관련 사업
 -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방산물자 관련 사업
 - 기타 북한의 전력증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산업
 -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동시승인 제도 도입
 - 300만불 이하의 협력사업
 -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고용사업
 - 남북한 당국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

또한 정부는 「경협활성화 조치」에 따라 남북간 교역 및 협력사업 활성화
 화를 위해 기계·장치 등 생산설비의 대북 반출시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을 축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북교
 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를 개정하여 1998년 6월 19
 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98.6.19)〉

- 기계·장치·설비의 경우 「1회 100만불 이상 또는 연간 미화 300
 만불 이상 반출」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반출하도
 록 한 규정을 삭제
-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이나 그 협력사업의 결과로 생산된 물품을 반출·입하는 경
 우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한 물품은 사업승인의 범위내에서 「반출
 ·입 포괄승인품목」으로 구분하여 개별적 승인없이 반출·입할
 수 있도록 함
- 별표1의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을 205개에서 178개로 축소함
-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등 개별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
 는 도서, 음반, 비디오필름 등을 「남북교역대상물품」으로 명시하
 여 반입승인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라. 교역질서확립 및 절차간소화 조치

정부는 최근들어 북한물품의 부정 반입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중
 시하고 교역질서확립과 국내산업피해 구제·방역 및 생산자 보호 등의
 차원에서 일부품목에 대해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분류하고, 거래형태
 (무상)로 인해 반출입승인을 요하게 되는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및 그

생산품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않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북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999년 8월 16일부터 시행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99.8.16)〉

○ 반입승인대상 품목의 조정

- 산업피해 구제, 식물검역 및 생산자 보호 등을 위해 반입제한이 필요한 다음 품목에 대해서는 승인대상품목으로 분류
 - 포켓용ライター(가스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 및 없는 것)
 - 벧짚
 - 꽃게(산것·신선 또는 냉장 및 냉동)
- 북한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는 '민어'는 반입승인대상품목에서 삭제
 - ※ 별표 1의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 수는 178개에서 182개로 늘어남

○ 반출입 절차 간소화

- 무상반출입 등 거래형태로 인해 반출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및 그 생산품에 대해서는 승인절차 없이도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북한물품반입승인신청서' 등 4종의 서식을 제정

○ 용어 및 조문 정리

-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을 얻어야 하는 물품·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대해 새로이 구분 정리

또한 외국인산 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국내산업 피해구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해 반입승인대상물품으로 분류코자 「남북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0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2000.9.28)〉

○ 반입승인대상 품목의 조정

- 국내산업피해 구제조치(긴급관세 30% → 315%)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냉동마늘 등에 대하여 반입승인대상물품으로 분류
 - 냉동마늘(0710.80.2000)
 - 초산조제마늘(2001.90.9060)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재정경제부 고시)의 개정에 따라 반입승인대상물품중 일부를 개정
 - 마늘(0703.20.0000) → 탈피한 것(0703.20.1000)
기 타(0703.20.9000)

※ 별표 1의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 수는 182개에서 185개로 됨

마. 베를린선언 및 남북공동선언

2000년 3월 9일 김대중 대통령은 베를린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남북화해·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북한의 경제회복을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바 있다.

〈베를린선언(2000.3.9)〉

-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 경제회복 지원
- 한반도 냉전종식과 남북간 평화공존
- 이산가족문제의 해결
- 남북 당국간 대화 추진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발표된 남북공동선언은 남북간 불신과 반목을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틀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써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북공동선언(2000.6.15)〉

-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
- 8·15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비전향장기수 문제 등 인도적 문제 해결
- 경협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사회·문화·체육 등 제반 분야 교류협력 활성화
- 합의사항 실천을 위한 당국간 대화 개최

II. 남북교역의 현황

1. 물자교역 현황

가. 교역규모

남북한간의 물자교역은 1988년 「7·7선언」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대북한 경제개방 조치를 취한 이후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조치 발표후 첫째인 1989년의 교역량은 1천9백만달러였고 이듬해인 1990년에는 1천3백만달러로 첫 2년간은 2천만달러 이하였다.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등이 제정·시행되어 남북간의 교역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1991년에는 교역량이 1억달러를 넘어섰고 1992년에는 1억7천만달러를 상회하는 규모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위탁가공교역도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북한핵」 문제로 남북관계가 어려웠던 1993년과 1994년에도 물자교역은 꾸준히 진행되어 교역량이 2억달러 수준에 이르렀으며, 위탁가공교역도 2천5백만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1994년 11월 정부가 남북간의 시범적 경협과 기술자 방북 등을 포함한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취한 이후 남북간의 교역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5년에는 2억9천만달러를 기록하였다.

1996년에는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등으로 인해 교역규모가 2억5천만달러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1997년에는 북한으로부터 철강금속류의 반입 증가와 위탁가공교역의 확대,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의 진전 등에 따라 교역량이 3억8백만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22.3% 증가함으로써 남북교역사상 최초로 3억달러를 돌파하였다.

그러나 1998년에는 IMF상황하의 환율상승, 내수경기위축 등 교역여건 악화로 인한 반입감소가 두드러져서 금강산 관광사업 및 무상지원 물품의 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 28%가 감소한 2억2천만달러에 머물렀다.

1999년에는 급냉했던 국내경기가 되살아 나면서 남북교역도 농수산물 반출입, 위탁가공교역 및 비거래성 물자반출 증가에 따라 사상최고치인 3억3천만달러에 이르렀으며, 상승세는 계속 이어져서 2000년 9월말 현재의 실적 이 전년동기에 비해 28%가 증가한 3억3천만달러 수준에 달하고 있다.

남북교역이 시작된 1989년이래 2000년 9월말까지의 교역실적은 통관기준으로 총 24억3천만달러이며, 이중 반입이 15억7천만달러, 반출이 8억6천만달러이다. 1995년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한 쌀 15만톤 약 2억4천만달러를 포함하면 총 교역량은 약 27억달러이다.

남북교역 현황

(단위: 천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합 계		
	건 수	품목수	금 액	건 수	품목수	금 액	건 수	품목수	금 액
'89	66	25	18,655	1	1	69	67	26	18,724
'90	79	23	12,278	4	3	1,188	83	26	13,466
'91	300	44	105,719	23	17	5,547	323	61	111,266
'92	510	76	162,863	62	24	10,563	572	100	173,426
'93	601	67	178,167	97	38	8,425	698	101	186,592
'94	827	73	176,298	495	92	18,249	1,322	159	194,547
'95	1,124	105	222,855	2,720	174	64,436	3,844	265	287,291
'96	1,648	122	182,400	2,980	171	69,639	4,628	280	252,039
'97	1,806	140	193,069	2,185	274	115,270	3,991	385	308,339
'98	1,963	136	92,264	2,847	380	129,679	4,810	486	221,943
'99	3,089	172	121,604	3,421	398	211,832	6,510	525	333,437
2000년 1~9월	2,676	170	105,278	2,517	442	224,715	5,193	564	329,993
총 계	14,689		1,571,451	17,352		859,611	32,041		2,431,062

* 주: '95년 교역실적에는 대북 쌀 지원 237,213천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나. 교역형태·품목

(1) 교역형태

북한은 남북한간의 물자교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북교역은 대부분이 해외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약재와 농산물 및 위탁가공교역의 일부품목에 대해 북한당사자와 직접 협의하고 계약하는 직접교역 방식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반입과 반출의 비율은 초기에는 10:1 비율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1996년에는 3:1, 1997년에는 1.7:1로 반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1998년에는 1:1.4, 1999년에는 1:1.7의 비율로 반출이 반입을 초과하였다. 이는 KEDO가 지원하는 중유, 금강산 관광사업물자, 경수로사업물자, 무상지원물자, 기타 협력사업용물자 등의 반출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다.

(2) 반입품목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초기에는 금괴, 아연괴 등 철강금속류를 비롯하여 광산물 등 주로 1차 산품이 대부분이었으나, 1994년 이후에는 철강금속과 광산물의 반입 비중이 줄어들고 위탁가공제품인 섬유류의 반입이 증가하면서 2차 산품의 비중이 높아지는 형태로 품목구조가 바뀌었다. 1999년의 경우 반입품목은 농림수산품이 39%, 섬유류 3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철강금속의 비중은 13%선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2000년 9월말 현재 반입품목의 품목별 구성은 농림수산품 48%, 섬유류 33%, 철강금속류 9%, 전자 및 전기 5%, 화학제품 1%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2000년 1~9월중 품목별 반입현황

(단위 : 천달러, %)

품 목	'98년(A)		'99 (B)		2000년 1~9월		증가율 (B/A)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농림수산물	21,798	23.6	47,868	39.4	50,851	48.3	119.6
광 산 물	765	0.8	2,462	2.0	246	0.2	221.7
화학공업생산물	2,427	2.6	2,494	2.1	1,335	1.3	2.7
섬 유 류	38,794	42.0	45,513	37.4	34,537	32.8	17.3
철강·금속제품	20,254	22.0	16,120	13.3	9,307	8.8	-20.4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698	0.8	1,557	1.3	1,466	1.4	123.2
전자 및 전기	3,518	3.8	2,838	2.3	5,176	4.9	-19.3
기타제품	4,010	4.3	2,707	2.2	2,349	2.2	-32.5
기타(코드 불확실)	-	-	45	0.0	9	-	-
계	92,264	100.0	121,604	100.0	105,278	100.0	31.8

(3) 반출품목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초기에는 농업용 비닐자재 등 화학제품이 최대품목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93년부터는 위탁가공교역이 늘어남에 따라 섬유류가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품목 구조가 크게 바뀌었으며, 1997년 이후에는 KEDO 중유반출, 북한 원전건설용 물자, 금강산 관광사업용 물자, 무상지원물자의 반출증가로 농산물, 건설용 자재·장비 등의 반출이 증가되고 있다.

2000년 9월말 현재 반출품목의 품목별 구성은 화학공업제품 40%, 섬유류 14%, 기계류 11%, 비금속 광물제품 6%, 일차산품 10%, 철강·금속제품 4%, 전자 및 전기 10%,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1%로 전년에 비해 귀금속광물제품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화학공업제품, 전기전자제품, 일차산품 등의 반출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2000년 1~9월중 품목별 반출현황

(단위 : 천달러, %)

품 목	'98년(A)		'99년(B)		2000년 1~9월		증가율 (B/A)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일차산품	19,944	15.4	17,834	8.4	21,500	9.6	-10.6
화학공업제품	5,054	3.9	42,691	20.2	89,356	39.8	744.7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4,717	3.6	4,962	2.3	3,078	1.4	5.2
비금속 광물제품	21,467	16.6	50,542	23.9	13,344	5.9	135.4
섬 유 류	28,543	22.0	36,286	17.1	32,375	14.4	27.1
생활용품	3,707	2.9	3,832	1.8	3,502	1.6	3.4
철강·금속제품	9,475	7.3	16,953	8.0	9,842	4.4	78.9
전자 및 전기	5,495	4.2	7,307	3.4	23,381	10.4	33.0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28,923	22.3	26,985	12.7	25,442	11.3	-6.7
잡 제 품	2,355	1.8	3,484	1.6	2,876	1.3	48.0
기타(코드 불확실)	-	-	955	0.5	21	-	-
계	129,679	100.0	211,832	100.0	224,715	100.0	63.4

다. 위탁가공교역

위탁가공교역은 우리의 원·부자재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완제품을 다시 반입하는 교역방식이다. 1991년 코오롱상사가 학생가방을 간접교역방식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1992년 838천달러, 1993년 7,008천달러, 1994년 25,663천달러, 1995년 45,892천달러, 1996년 74,402천달러, 1997년 79,069천달러로 크게 증대되어 왔다.

1998년 위탁가공 교역액(70,988천달러)은 IMF상황하의 국내경기위축으로 전년도에 비해 10% 감소하였으나, 전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2%로 1997년도의 26%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였다.

국내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1999년은 1억달러 수준으로 크게 증가되었으며 2000년 9월말 현재도 9,382만달러로 증가세는 계속되어 전년동기에 비해 31% 증가하였다.

위탁가공교역이 이처럼 증대되고 있는 이유는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가공교역 추진을 향후 남북경협 준비과정으로 보아 국내 기업들이 적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측에서도 노동력을 활용하면서 투자부담 없이 외화획득이 가능하고, 낙후된 경공업분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간 임금수준 차이 등 상이한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상호보완성이 높은 위탁가공 분야는 섬유류, 전자부품 조립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위탁가공교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의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칼라TV, 전화기, 자동차배선, 컴퓨터모니터부분품, 카세트이프 등으로 그 품목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북한도 일부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기술교육을 위한 기술자 방북과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위탁가공교역 현황

(단위 : 천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합 계	
	금 액	위탁가공	금 액	위탁가공	금 액	위탁가공
1989	18,655	-	69	-	18,724	-
1990	12,278	-	1,188	-	13,466	-
1991	105,719	-	5,547	-	111,266	-
1992	162,863	638	10,563	200	173,426	839
1993	178,167	2,985	8,425	4,023	186,592	7,008
1994	176,298	14,321	18,249	11,343	194,547	25,663
1995	222,855	21,174	64,436	24,718	287,291	45,892
1996	182,400	36,238	69,639	38,164	252,039	74,402
1997	193,069	42,894	115,270	36,175	308,339	79,069
1998	92,264	41,371	129,679	29,617	221,943	70,988
1999	121,604	53,736	211,832	45,883	333,437	99,620
2000년 1~9월	105,278	48,965	224,715	44,857	329,993	93,822
계	1,571,451	262,322	859,611	234,980	2,431,062	497,302

2. 남북간 수송장비 운행 현황

가. 개 황

1991년 남북한간에 체결한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3조 제5항에서는 남북 사이의 교역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공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후속협약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남북한간에는 공식적인 수송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남북관계 사정에 따라 1988년 대북경제개방조치 이후 1993년말까지 남북한간에 이루어진 5억불 상당의 교역물자 수송은 모두 외국선박에 의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남북간의 항로에 내국선사의 참여기반을 조성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족내부의 항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1994년 6월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승인 제도를 도입하여 남북한간에 선박 등 수송장비를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외국인 모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아직까지는 제3국적선에 의한 수송이 대부분이나 1995년 쌀 15만톤 대북지원, 1997년 이후 대한적십자사의 지원 물품과 경수로 물자, 금강산 관광사업용 물자 등을 우리 국적선이 운송한 사례와 같이 남북간 해운분야의 상호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나. 남북간 선박운항

(1) 운항횟수

남북간 수송장비운행 승인제도가 시행된 1994년 7월에서 2000년 9월 까지 남북간 수송장비 운행은 편도기준으로 4,833회이다. 이중 북한에

서 남한으로의 운행이 2,868회로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운행 1,965회보다 약 1.5배가 많다. 남한지역에서는 인천항, 부산항, 북한지역에서는 남포항, 나진항으로 선박운행이 집중되고 있으나 최근 수산물 등 수송을 위해 해주, 청진, 신의주, 흥남, 원산 등지로의 선박운행도 증가하고 있다.

남북간 선박운행 현황

(단위 : 횟수)

구 분	'94년 7~12월	'95년	'96년	'97년	'98년(A)	'99년(B)	2000년 1~9월	증가율 (B/A)
남한→북한	27	99	101	113	260	731	634	181.2%
북한→남한	70	208	221	244	342	983	800	187.4%
계	97	307	322	357	602	1,714	1,434	184.7%

(2) 물동량

1994년 7월부터 2000년 9월까지 남북간의 물동량은 3,827천톤으로서 이중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물동량은 1,371천톤이며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물동량은 2,456천톤이다. 1997년 이전까지는 북한→남한 물동량이 남한→북한 물동량보다 월등히 많았으나, 경수로공사물자, 금강산 관광사업 물자, 무상지원물자 등의 증가로 인해 남한→북한 물동량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항구별로는 남한지역은 인천항, 울산항, 부산항, 목포항, 북한지역은 나진항, 남포항, 청진항에서 물동량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다.

남북간 물동량 현황

(단위 : 톤)

구 분	'94년 7~12월	'95년	'96년	'97년	'98년(A)	'99년(B)	2000년 1~9월	증가율 (B/A)
남한 → 북한	6,758	281,220	147,888	361,282	396,111	780,593	482,292	97.1%
북한 → 남한	131,136	345,778	187,610	249,759	162,220	203,019	91,780	25.2%
계	137,894	626,998	335,498	611,041	558,331	983,612	574,072	76.2%

Ⅲ. 남북교역의 절차

1. 북한주민접촉 및 왕래의 처리

가. 북한주민접촉

(1) 접촉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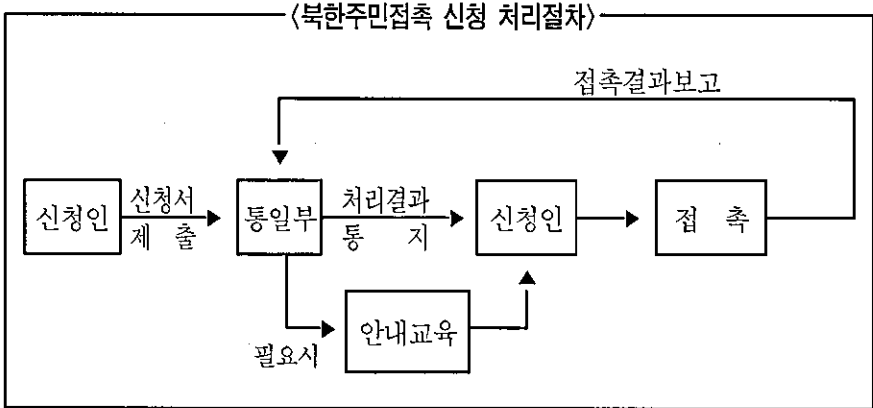
북한을 방문하거나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협의 등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에 따라 정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접촉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과정을 말하며, 이때 의사교환의 방법·수단·장소 등을 불문하고 남북한 주민 상호간에 어떤 형태로든 특정내용의 의사가 교환되었다면 접촉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북한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의사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중개인(제3자)을 통하거나 전화, 우편, Fax, Telex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교환도 모두 접촉에 해당된다.

법에서 말하는 남한주민은 남한에 적을 둔 주민(법인·단체 포함)을 의미하며, 북한주민은 북한에 적을 둔 주민과 조총련 등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 구성원을 의미한다.

(2) 북한주민접촉 절차



⊙ 북한주민접촉신청

북한주민을 접촉하고자 하는 경우, 접촉 15일 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우편신청이나 대리신청도 무방하며,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북한주민접촉 신청은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15일내에 처리되며, 그 처리결과는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문서에는 접촉신청이 승인된 경우 접촉인, 피접촉인, 접촉목적, 접촉방법, 승인 유효기간 등이 명시되며, 불허의 경우에도 불허사유가 기재된다.

신청 처리기간은 보통 15일 가량이 소요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해야 한다.

〈신 청 서 류〉

- 북한주민접촉신청서 1부
- 신원진술서 1부
-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북한주민접촉신청서〉에는 신청인 인적사항, 피접촉예정인 인적사항, 접촉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원진술서〉에는 신청인의 신원사항을 작성항목에 따라 직접 기재하고 우측 상단에 신청인 사진을 부착해야 한다.

〈북한주민접촉신청서〉와 〈신원진술서〉는 소정양식으로 통일부 및 한국 무역협회 각 지부에 비치되어 있다.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신청사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접촉계획서, 신청단체 소개서, 교류내용과 접촉목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 등이다.

〈접촉계획서〉는 신청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대북교류사업과 접촉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설명하는 서류로서 북한주민접촉신청서에 기재한 접촉목적, 접촉경위, 접촉일정 및 장소 등의 내용항목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소정양식은 없으며, 신청인이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신청단체소개서〉는 교류주체의 남북교류 수행능력을 가늠해 보기 위한 참고자료로 조직현황, 정관,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초청장, 행사계획서, 일정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면 승인여부를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 접촉 안내교육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접촉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접촉인에게 안내교육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접촉승인을 받은 자가 자발적으로 안내교육을 요청할 수도 있다.

안내교육은 북한주민접촉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관련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남북한간의 원활한 교류협력을 돕기 위한 것이다.

교육내용은 남북관계현황, 북한실상, 북한주민접촉시 행동요령, 기타 접촉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 접촉결과 보고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접촉승인을 받아 북한주민을 접촉한 경우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접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접촉결과 보고는 6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자세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북한주민을 접촉한 자는 접촉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을 정부와 협의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음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접촉결과보고는 특정양식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승인문서와 함께 우송되는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양식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 승인유효기간 및 재신청

북한주민접촉 승인유효기간은 최장 3년의 범위내에서 사안에 따라 신축성 있게 결정된다. 승인유효기간중에는 승인받은 접촉목적 범위내에서는 횟수에 제한없이 접촉할 수 있다.

그러나 승인기간 내에 소정의 성과를 얻지 못하거나 북한측과 협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재승인을 받아 계속 협의를 진행시키면 된다. 재승인 신청시 필요한 신청서류와 절차는 최초 신청때와 동일하다. 다만, 신청 서류중 <신원진술서>와 같이 처음 신청할 때와 동일한 서류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그간의 북한주민과 접촉한 내용 등 추진경과를 설명하는 자료는 추가해야 한다.

또한, 비록 승인유효기간 내의 접촉이라 할지라도 당초 승인받은 접촉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역시 별도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후 신고

북한주민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득이 사전승인을 얻지 못하고 북한주민을 접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우에 한하여 접촉후 7일 이내에 접촉사실을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면 사전에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같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 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 외국에서 가족(8촌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인 북한주민과 회합한 자
-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 편지의 접수 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사후신고 서식으로는 소정양식인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후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나. 남북한 왕래

(1) 남북한 왕래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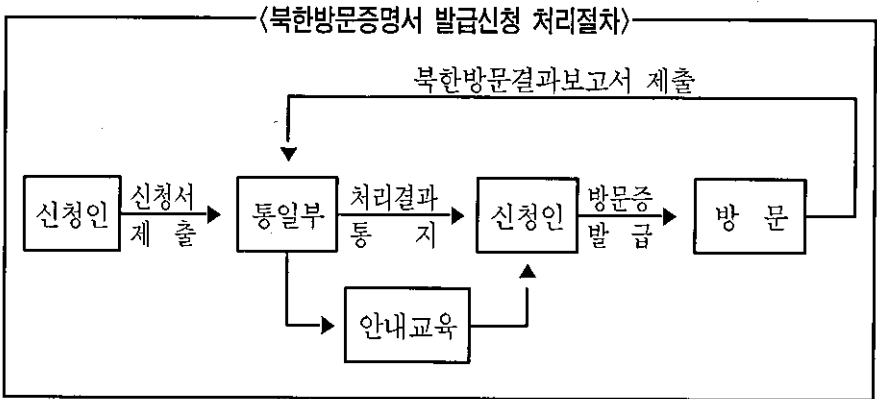
법 제9조제1항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남북한 왕래란 남한주민이 북한지역을 방문하거나 북한주민이 남한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은 <북한방문증명서>를, 남한지역을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지하여야 한다. 판문점을 통해서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것은 물론, 제3국을 경유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재외국민은 해외에서 북한을 방문할 때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는 대신 재외공관에 <북한방문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조총련」인사와 같이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해외거주 동포가 남한을 방문할 때는 <남한방문증명서> 대신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 방문하여야 한다.

(2) 북한방문 절차



⊙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우편신청이나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다만, 대리신청시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해야 한다.

북한방문이 승인된 경우는 증명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방문목적, 방문기간, 신장, 방문증 발급일자 그리고 방문자 사진이 부착된 〈북한방문증명서〉가 발급된다.

발급된 〈북한방문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을 통해 수령할 수도 있다. 대리인을 통해 수령할 경우는 본인의 위

임장,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소정의 북한방문 안내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안내교육을 이수한 후 <북한방문증명서>가 교부되며, 해외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재외공관을 통해 <북한방문증명서>가 전달된다.

북한방문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허사유가 명시된 문서가 신청인에게 우송된다.

— 〈신 청 서 류〉 —

-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1부
- 신원진술서 1부
-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cm·세로 4.5cm) 4매
-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 (해당자에 한함)
-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와 <신원진술서>는 소정양식으로 통일부 및 한국무역협회 각 지부에 비치되어 있다.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에는 신청인 인적사항, 방문대상자 인적사항, 방문목적, 방문 예정일정, 방문 및 귀환 예정경로 등을 기재하며, 우측상단에 신청인 사진을 부착하여야 한다. <신원진술서>는 북한주민접촉시 제출하는 것과 동일하다.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는 군미필자(허가

서)의 경우 해당지역 병무청에서, 군필자(신고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해주는 서류이다.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는 북한기관이 발행하는 초청장 등 신변안전보장관련 문서를 의미하며, 초청장의 경우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초청장은 일반적으로 초청목적, 초청기간, 피초청인,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 보장, 초청인(기관)의 서명·날인, 발급일자 등으로 구성된다.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는 신청사안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방북활동계획서, 신청단체 소개서, 교류 내용과 방북목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하다.

◎ 방문기간

방문기간은 방문목적과 북한측의 초청내용에 따라 적정기간이 부여된다. 방문기간은 최장 1년 6월까지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최초 승인된 방문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도 있다. 방문기간 연장은 소정의 〈방문기간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해야 한다.

또한 최초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시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를 제출한 방문자는 병역법에 의한 〈기간연장 허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일 연장한 기간의 만료후에도 계속 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면 〈북한방문증명서〉를 새로이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최초 신청때와 같다.

다만, 신청서류중 〈신원진술서〉와 같이 처음 신청할 때와 동일한 서류

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그 동안의 방문활동을 설명하는 자료는 제출해야 한다.

(수시방북제도)

1998년 4월 30일 「남북경협활성화조치」에 따라 1회 승인으로 1년 6개월의 범위내에서 수시방북 적용대상이 「협력사업자승인을 받은 기업」에서 「모든 기업인」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수시방북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수시방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북한방문 안내교육

북한방문자는 방문전에 북한방문 안내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내교육은 북한방문과 관련된 필요한 지식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북한방문자의 원활한 방문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다. 교육내용은 남북관계현황, 북한실상, 북한방문시 행동요령, 기타 방문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 출입심사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는 출입장소에서 출입심사 공무원에게 소정의 <출입신고서>와 <왕래주민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고 출입심사를 받아야 한다.

출입심사에서는 신원확인, 휴대물품 등의 검사, 검역, <북한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이 이루어진다.

특히 휴대물품은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통일부고시)」에 따라 반입·반출이 금지되는 물품과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

아야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편의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에 소개되어 있다.

◎ 북한방문증명서 재발급신청

〈북한방문증명서〉가 분실되었거나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었을 경우, 기타 기재사항에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북한방문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소정양식인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와 증명서 재발급용 사진(2매)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북한방문증명서 반납

〈북한방문증명서〉는 방문을 마치고 귀환할 때 반납하여야 한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귀환할 경우는 출입장소(관문점 등)에서 반납해야 하며, 제3국을 통해 귀환할 경우에는 귀환후 즉시 통일부에 반납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반납할 수도 있다.

◎ 북한방문 결과보고

북한방문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북한방문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정된 보고서식은 없으며 신청인이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3) 남한방문 절차

남한방문절차는 원칙적으로 남한을 방문하고자하는 북한주민에게 해당되

는 사항이나, 현실적으로는 북한주민을 초청하는 남한초청자가 북한주민을 대신하여 제반절차를 밟게 되므로 북한주민 초청절차라고도 할 수 있다.

신청서류 외에는 기본적으로 북한방문절차와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신청서류만을 설명하기로 한다.

〈신청서류〉

- 남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1부
-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cm·세로 4.5cm) 4매
-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 본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초청장 사본 등 초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남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법령에 의한 소정양식으로 남한초청자가 북한주민을 대신하여 작성한다.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는 북한주민초청과 관련된 행사계획서, 초청경위서,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 등이다.

나머지 서류는 대리신청시 대리신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4) 남북한 왕래의 형태

남북한 왕래의 형태는 왕래경로에 따라 판문점을 통한 왕래와 제3국을 통한 왕래로 나눌 수 있으며, 판문점과 제3국을 통한 왕래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판문점을 통한 남북한 왕래는 남북한 주민이 판문점을 통해서 상대지역을 직접 왕래하는 경우로서, 왕래절차에 대한 남북한 당국간의 협의가 있는 후 가능하게 된다. 과거 남북당국간 회담, 남북간 전통음악 교환공연을 위한 왕래가 이에 해당된다.

제3국을 통한 남북한 왕래는 남북한 주민이 제3국을 경유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경우로서, 경유지로는 보통 중국(북경)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경우 북경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북한입국에 따른 별도의 수속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UNDP회의에 참가하는 남·북한 참석자들이 중국을 경유하여 남북한을 왕래한 바 있다.

판문점과 제3국을 경유한 남북한 왕래는 판문점을 통해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한 후 방문지에서 제3국을 통해 귀환하는 경우와 제3국을 통해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한 후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는 경우이다.

1991년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의 남한선수들은 판문점을 통해 서울에 온 북한선수들과 함께 「서울결단식」을 갖고 포르투갈로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곧장 입북하여 「평양해단식」을 마치고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바 있다.

(5)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 재외국민의 범위

법 제9조제2항은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북한방문은 사전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

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얻은 자를 의미한다.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허가 요건은 체류국의 관련제도에 의해서 정해지
는 것이므로 재외국민의 자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국가에 따
라서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으며 장기체류허가의 요건도 나라마
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
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대해서도 재외국민의 범위에 포
함시켜 방북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절차

재외국민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방문하기 5일전 또는 귀
환후 10일이내에 재외공관에 <북한방문신고서>,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남북교역 관련 처리

가. 남북교역의 개념

남북교역이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하며,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도 포함)을 말한다.

따라서 제3국산 물품이라 하더라도 남북간을 이동할 경우에는 남북교역(반출입)에 해당되며, 북한산 물품이 제3국으로 수출되어 남한으로 수입되는 경우는 대외무역(수입)에 해당된다.

남북교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절차와 구분되는 반출·입절차에 따라 이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2항 및 영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관세의 면제는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며 반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제3국산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러한 의미의 남북교역에는 단순한 반출·입 외에도 연계교역, 임가공교역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연계교역」이라 함은 반출과 반입이 연계된 교역을 말하며,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교역(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등을 포함한다.

「임가공교역」이라 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반입하는 「위탁가공교역」과, 가공임을 가득하기 위하여 북한으로부터 가공할 원부자재를 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반출하는

「수탁가공교역」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중 위탁가공교역은 최근들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교역방식이라 할 수 있다.

나. 남북교역의 당사자

남북교역(북한과 제3국간 물품의 중계무역 포함)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과 무역업 고유번호가 부여된 업체(관계자)가 추진할 수 있으며, 통일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역당사자 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교역을 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은 자이면 남북교역을 할 수 있으나, 유통질서확립 또는 보건·안전상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국내법체계에서 특수한 자격을 요구하는 품목을 교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품목의 취급자격도 갖추어야 한다.

〈특수취급자격이 요구되는 예〉

- 먹는샘물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
- 식품류 : 수입식품판매업 신고
- 주류 : 주류수입(중개업) 면허 소지
- 북한도서 및 정기간행물 : 문화관광부 허가와 등록
- 삼산화 비소(Arsenic trioxide) : 독극물 수출입업 등록
- 한약재 : 의약품 수입자 확인증 소지

다. 남북교역 대상물품의 구분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은 관세법 제7조 별표 관세율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품목으로 하며, 동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통합분류목록표에 의한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에 의하여 “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과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으로 구분되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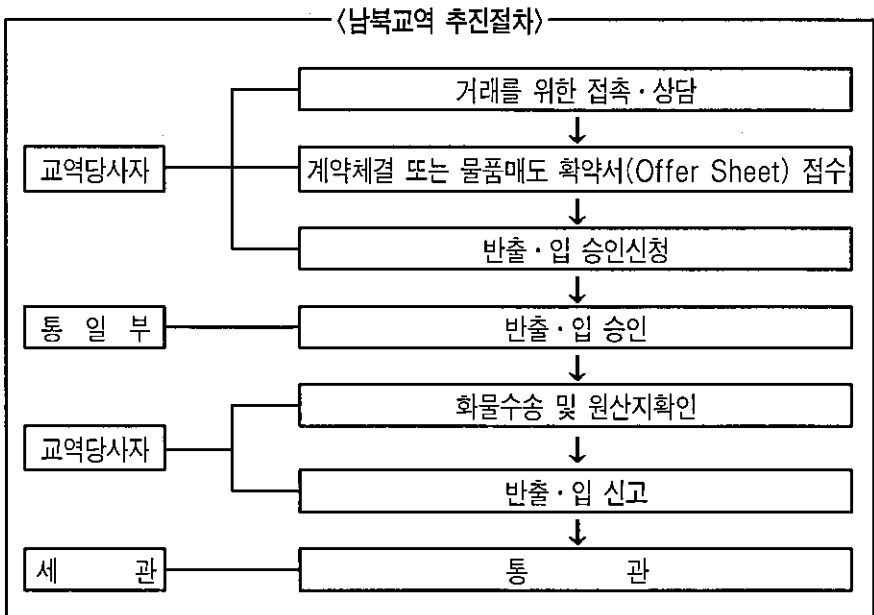
-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수입에 허가·승인·신고·확인·증명 등의 제한이 있는 품목
- 반입물품으로서 도서, 음반, 미술품, 도예·공예작품,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이미 사용한 것과 통용되지 아니한 것), 사진, 필름(노광한 사진필름 및 영화·비디오물을 포함한다.), 엽서·연하장
- 반입물품으로서 별표1에 계기한 품목
- 임대 또는 무상으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 외국환거래법 제4장 지급과 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지급과 거래

(2)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

- 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물품 및 지급과 거래
 - － 상기 “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이외의 경우

- 법 제17조에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물품을 반출하거나 그 사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사업승인의 범위내에서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한 물품. 다만,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하는 원·부자재 및 그 위탁가공으로 생산하여 반입하는 물품. 다만,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부록참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1조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라. 남북교역 추진절차



(1) 접촉 및 상담

북한측 교역당사자와의 접촉 및 상담은 거래초기에는 대부분 중개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홍콩·일본·중국·싱가폴 등 제3국의 무역상·해외동포·한국상사의 제3국 현지법인 등이 중개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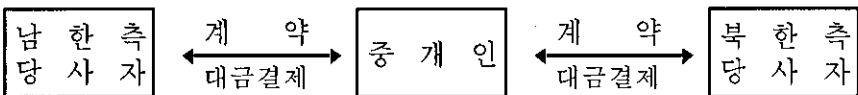
그러나 일정기간 교역이 진행된 경우에는 중개인을 통한 접촉·상담경험과 거래과정을 통해 조성된 상호신뢰를 토대로 북한측 교역당사자와 직접 접촉·상담하는 관계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직접 접촉·상담은 주로 중국 등의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교역을 위한 북한주민접촉을 위해서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2) 계 약

남북교역 당사자간의 계약형태 등에 따라 남북교역은 직접교역과 간접교역으로 구분된다.

간접교역은 남한의 교역 당사자와 북한의 교역 당사자 사이에 중개인을 매개로 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형태로서, 현재 전체 남북교역의 약 90% 이상이 간접교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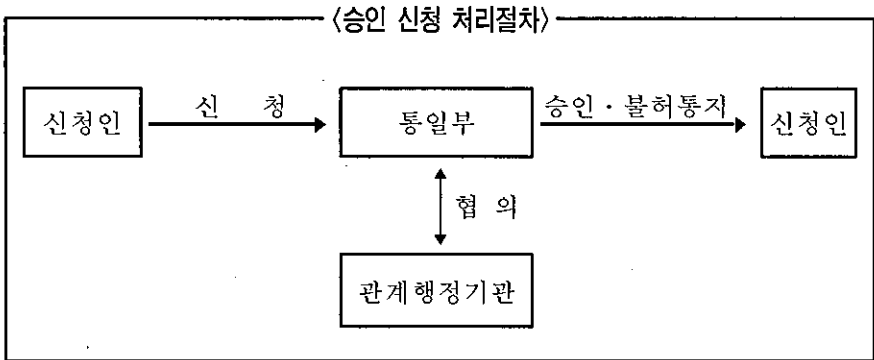
직접교역은 남북한의 교역당사자가 계약의 쌍방당사자가 되는 형태로서, 현재로서는 교역분쟁발생시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직접교역을 바람직한 남북교역의 형태로 보아 이를

권장하고 있는 만큼, 승인여부 검토나 통관시 원산지 확인 등에 있어 유리한 점이 있다.

간접교역은 북한측 당사자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중개인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안전한 교역형태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중개인의 보전능력 등을 감안한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 장치가 마련되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3) 반입·반출 승인(승인을 요하는 품목)



◎ 반입승인

반입자는 반입물품이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에 의거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일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중 금액의 변경(다만, 동일한 물품으로서 10%이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금결제방법, 승인유효기간 연장, 승인조건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한편,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의 반입신청 접수시 통일부에서는 당해 품목의 과다공급에 따른 국내시장 교란 가능성, 국내 생산자 보호 측면에 대한 고려, 반입가격의 적정성, 남북교역의 안정적인 확대·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기타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만큼, 반입품목 결정시 이들 기준 항목에 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

반입 승인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 청 서 류〉—

- 북한물품 반입승인신청서(소정양식) 5부
- 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1부(간접교역의 경우 중개인과 북한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 포함)
- 반입대행 계약서 1부(반입자와 위탁자가 다를 경우)
- 특정물품취급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
-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북한물품반입관련내역서(소정양식), 북한주민접촉승인서 사본 및 접촉결과보고서 각 1부 등

◎ 반출승인

반출의 경우에도 반출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반출품목은 대부분 반출포괄승인품목으로 되어 있어 개별적인 승인없이도 반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출신고시 세관에 동 물품이 북한에 반출(제3국 단순경유 포함)되는 것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반출승인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 청 서 류〉

- 반출승인신청서(소정양식) 5부
- 반출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간접교역의 경우 중개인과 북한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포함)
- 반출대행계약서 1부(공급자와 반출자가 다른 경우)
-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북한물품반출관련내역서(소정양식), 북한주민집축승인서 사본 및 접촉결과보고서 각 1부 등

◎ 반출입승인

반출, 반입이 연계되어 교역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대응물품이 승인을 요하는 품목인 때에는 반출입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반출입 혼합 거래 형태로는 연계교역에 의한 반출입(물물교환, 구상교역, 대응구매)과 중계교역에 의한 반출입이 있다.

연계교역에 의한 반출입승인은 반출과 반입이 연계된 하나의 계약서로 가능하며, 별도의 계약서로 작성할 경우에는 2개의 계약을 연계시키는 의정서(protocol)가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나타난 사례를 보면 가장 단순한 것으로서 남한 물품을 반출하고 그에 상응하여 북한의 물품을 반입하는 형태의 물물교환이 있으며, 일부 위탁가공교역도 반출입 승인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다.

반출입승인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 청 서 류〉

- 반출입승인신청서 5부
- 반출·반입계약서 1부(하나의 계약서)
 - 별도의 계약서로 작성할 경우에는 2개의 계약을 연계시키는 의정서(protocol) 추가
- 이행보증 또는 환급보증(필요한 경우)
-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반입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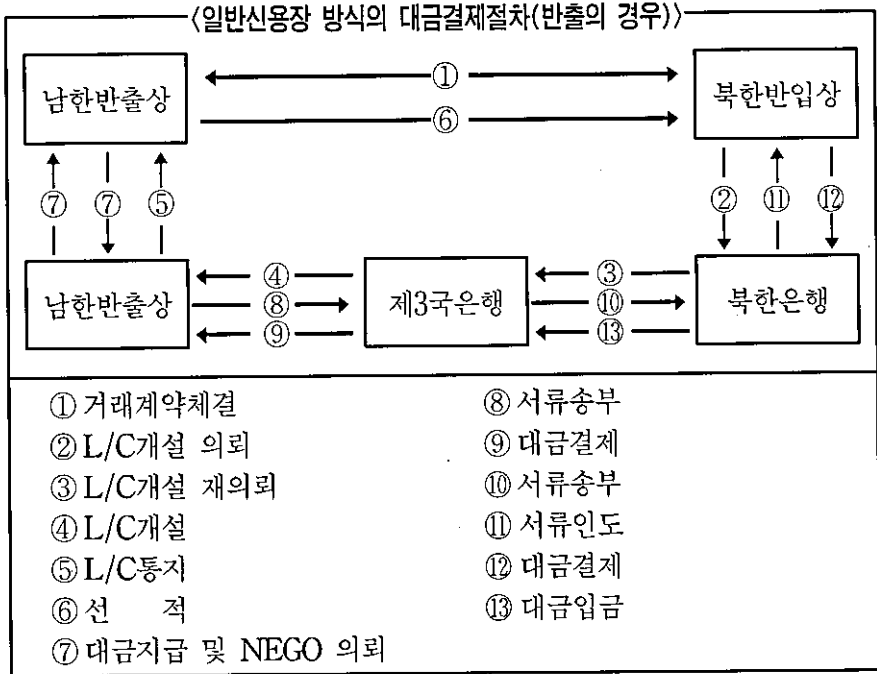
(4) 대금결제

남북간에는 1992년 9월 17일 발효된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조제8항에서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후속협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남북교역에 있어서의 대금결제는 일반 수출입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외국환거래법이 허용하고 있는 결제방법과 결제통화로 결제가 가능하다.

남북교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금결제 방법은 일반 신용장(L/C) 방식이며, 물물교환(Barter Trade)이나 송금환(T/T) 등도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금결제 방법이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지급 및 영수 방법이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교역품목이 포괄승인품목 일지라도 대금결제방법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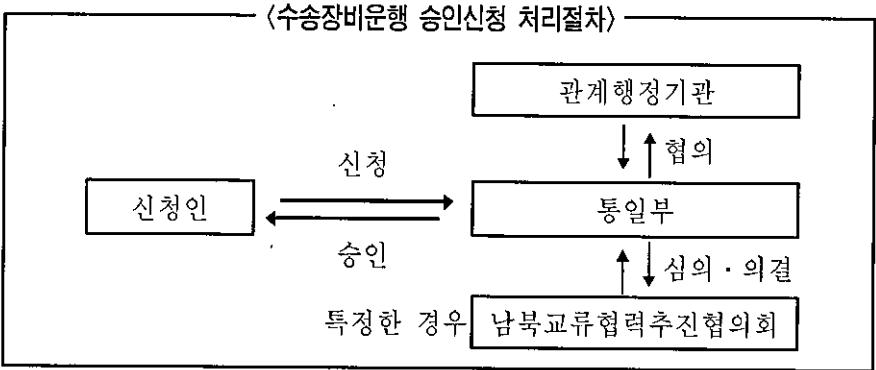
(5) 화물 수송

남북간에는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3조 제5항에서 “남북 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후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러한 합의사항이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남북간 물자의 수송은 제3국적선의 부정기 운항에 의존하고 있는 바, 이들 선박은 제3국을 경유하여 운항하거나 공해상을 통해 남북간을 직운항하고 있다.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수송장비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및 영 제42조 내

지 제45조의 규정과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통일부고시 제94-1호)」에 의하여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한주민(법인포함)은 물론 외국인(법인포함)도 남북한간에 선박 등 수송장비(국적불문)를 운행할 경우에는 승인대상이 되고, 제3국 항구를 경유하여 남북한간 수송장비를 운행하는 경우는 승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이며, 수송장비운행 승인신청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 청 서 류〉
-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소정양식) 1부
 - 운행계획서(운행경위 포함) 1부
 - 운행경위에는 운행일자, 운송경로, 수송화물내역, 화주 등의 내용 기재
 - 자동차 등록증 사본 또는 수송장비의 제원내역서 1부
 - 사용할 수송장비 미확보시에는 확보할 수송장비의 제원과 확보 방법 및 기한 등을 기재

- 선박의 경우는 선박국적증서 사본
-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남북간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선박의 경우, 북한 → 남한간 부정기운항의 경우에는 불필요
- 소정의 운행안전교육 이수 증빙서류 각 1부
 - 수송장비 운행요원 중 남한주민이 있을 경우 : 방북승인과 소정 교육을 받고 이수필증도 제출
- 대리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대리신청의 경우)
-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남북교역물품의 통관

남북교역물품 통관절차는 대부분 일반수출입 물품의 통관절차를 준용하여 처리되고 있으나(양식도 일반수출입신고서 사용),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중 북한산 물품에 대해 관세를 비과세함에 따라 원산지 확인 절차가 부수되는 점이 일반수출입 물품의 통관절차와 다르다.

◎ 반입물품통관

북한에서 반입한 물품의 반입통관 절차는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준용하므로, 『수입통관 사무처리규정』(관세청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면허를 받아야 한다. 북한산 물품의 경우 관세가 비과세 처리됨에 따라 반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전량검사 후 면허처리하고 있다.

북한에서 직반입한 물품의 반입신고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반입신고서(수입신고서 양식 사용)
- 반입승인서(승인을 요하는 품목인 경우)

- 가격신고서(invoice, 보험증서 포함)
- 선하증권사본
- 최근 2개월간의 선장확인 선박항해일지
- 원산지증명서
- 기타 검역물품인 경우 당해 검역증(식품인 경우 식품검사 합격증) 및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서류

아울러 제3국을 단순경유한 물품의 경우에는 직반입한 경우의 제출서류에서 선하증권 사본, 선박항해일지를 아래와 같은 서류로 바꿔서 제출하면 된다.

- 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까지의 선하증권 일체
- 제3국의 세관 등 권한있는 관공서가 발급한 단순경유증명서

◎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확인

〈원산지 증명서의 개념〉

원산지증명서란 당해 물품이 당해국 물품(원산지증명서)이거나 통과물품(재수출원산지 증명서) 또는 당해국에서는 가공만 거쳤음을 증명(가공원산지증명서, processing C/O)하기 위하여 당해국의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 등 권한있는 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말한다.

북한에서는 수출물품이 당해국산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산지 증명서라 하지 않고 「산지증명서」라고 부른다.

□ 원산지증명서의 수록내용 및 인정기준

원산지증명서는 발송인, 수화인, 발행번호, 발행일자, 당해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수송수단, 산지, 수출대상국 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하며 국제협약 또는 국제관례에 맞게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산지증명서」 등의 발송인, 수화인 등은 수입승인서(또는 반입승인서)상의 송화인과 일치해야 하고 당해 물품의 수량·중량도 수입승인서(반입승인서)상의 수량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것은 사유규명을 위한 소명자료를 세관에 제출한 후 통관해야 한다.

「국제협약 또는 국제관례」에 맞게 작성된 것이라 함은 국제관행상 작성방식(일정양식 사용, 타자 등으로 작성)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북한은 아직도 사회주의 관행에 의거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간혹 원산지증명서를 손으로 작성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국제협약에 맞지 않으므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도 있다.

□ 사용언어

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발급기관

원산지증명서는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또는 「조선무역은행」 등 북한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조선무역은행의 경우는 남한의 한국은행과 같은 조선중앙은행 산하의 은행으로서 은괴, 금괴 등 귀금속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산하의 원산, 흥남, 평양, 남포, 송림, 청진, 해주, 송악산 등 대외상품검사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예) 남포에서 발행한 경우(51-3-41) : 남포대외상품검사소번호-
검사원번호-발행일련번호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 비과세 인정기준〉

북한과의 교역은 내국간의 거래로 간주되어 북한산 물품에 대하여는 반입시 관세를 비과세 처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이 모두 관세 비과세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이 관세 비과세 처리되기 위해서는 남북교역 대상물품으로 반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산지가 북한임은 물론,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반입된 물품이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남북교역 대상물품으로 반입승인을 받은 물품

북한산 물품이 관세 비과세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남북교역 대상물품으로 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통일부고시 제 2000-1호 : 2000.9.28 개정)에 의거 「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과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으로 구분되어 있다.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은 통일부장관이 그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개별적인 승인없이도 반입될 수 있으며 「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은 개별적으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다. 따라서 「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 이외의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에 대해서는 통관시 남북교역 대상물품임을 신고하면 비과세 통관이 가능하다.

다만, 대외무역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수출입 승인면제 대상 물품중 통상적인 상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품의 견본 등을 반입할 때는 상기의 반입 승인서는 필요없고 북한산물품

반입사유서 및 그 소명자료를 세관에 제출하면 비과세 통관도 가능하다.

□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한 관세 비과세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가 북한이어야 하며, 반입통관시 세관에 이를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반입된 물품의 원산지확인 방법은 ① 북한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 ②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표시 ③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산지를 확인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치 않아도 북한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소명자료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제14조)

-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10만원 이하인 물품
- 우편물(관세법 제15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개인에게 무상송부된 탁송품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육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휴대품이나 별송품
- 재반출 조건부 일시반입물품
-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운송되었거나 제3국을 단순경유하여 반입된 물품

- 직반입된 물품의 확인방법

북한은 내부사정상 남한을 직교역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운

송선박이 출항시 신고한 국가로 실제 운항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결국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선하증권상의 운송목적지와 실제운송 경로가 상이할 수밖에 없어, 통관시에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과 당해 선박의 최근 2개월간의 기항증명서(ports of call) 및 선박항해일지(voyage memo)에 의해 당해선박의 북한입항 여부와 당해 물품의 북한선적 여부를 확인한 후 통관하여 주고 있다.

• 제3국 단순 경유물품

단순경유라함은 운송상의 이유 등에 의해 제3국에서 환적, 일시장치 등만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수입통관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제3국을 경유하여 반입한 물품이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는,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하지 않은 물품 즉 제3국에서 수입통관후 국내반입된 물품은 남북교역 대상 물품으로 취급되지 않고 일반수입 물품으로 취급되어 관세도 비과세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 절차를 거쳐 수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제3국 단순경유 여부 확인방법은 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까지의 선하증권에 의거 반입물품이 북한에서 적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아울러 제3국에서 환적·일시장치 등으로 단순경유하였음을 제3국의 세관 또는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거 확인한다.

〈경유국별 단순경유 입증서류〉

① 홍콩차이나

— 홍콩차이나상공회의소 발행 “재수출원산지증명서”

② 일 본

— 일본세관 발행 “적려허가통지서(積戻し許可通知書)”

③ 중 국

○내륙운송의 경우

— “과경화물보관단(過境貨物報關單)”

- 국외(북한)에서 출발하여 기차로 중국대륙을 통과하여 국외로 운송하는 화물

○항공 및 해상운송의 경우

— “진구화물재화청단(進口貨物載貨青單)”

- 국외(북한)에서 운송을 시작하여 중국 항구 또는 공항을 거쳐 원 수송장비로 계속 국외로 운송하는 화물에 대한 증명서

— “외국화물전운준단(外國貨物轉運准單)”

- 중국에서 수송장비를 바꾸어 국외로 운송하는 화물에 대한 증명서

○중국 내 보세구역 또는 보세창고에 일시 보관 후 재반출되는 경우

— “진(출)구화물보관단(進(出)口貨物報關單)”

- 단, 동서류의 무역방식란에 전구무역(轉口貿易)이라는 표시를 해야 함

◎ 반출물품 통관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수출품과 같이 세관장에게 신고(수출신고서 양식 사용)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레이다, 고성능컴퓨터, 야간투시경 등 「전략물자수출입공고(산업자원부고시)」상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략물자의 부정유출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고 물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7) 관세 등

◎ 관 세

법 제26조제2항에 의해,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운송(제3국 단순경유 포함)된 반입물품중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직운송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물품은 관세부과의 대상이 된다.

◎ 내국세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교통세 등 내국세는 반입통관시 세관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시 과세표준에 사용하는 물품의 가격은 일반수입 물품과 같이 「관세평가시행세칙」상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된다. 즉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실제 지불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관세환급

일반 수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는 이를 환급한다.

마. 위탁가공교역

(1) 위탁가공교역 개요

대북한 위탁가공교역은 가공임지급을 조건으로 가공할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의 거래상대방에게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동가공제품을 국내에 재반입하는 교역을 말한다.

(2) 반출입 승인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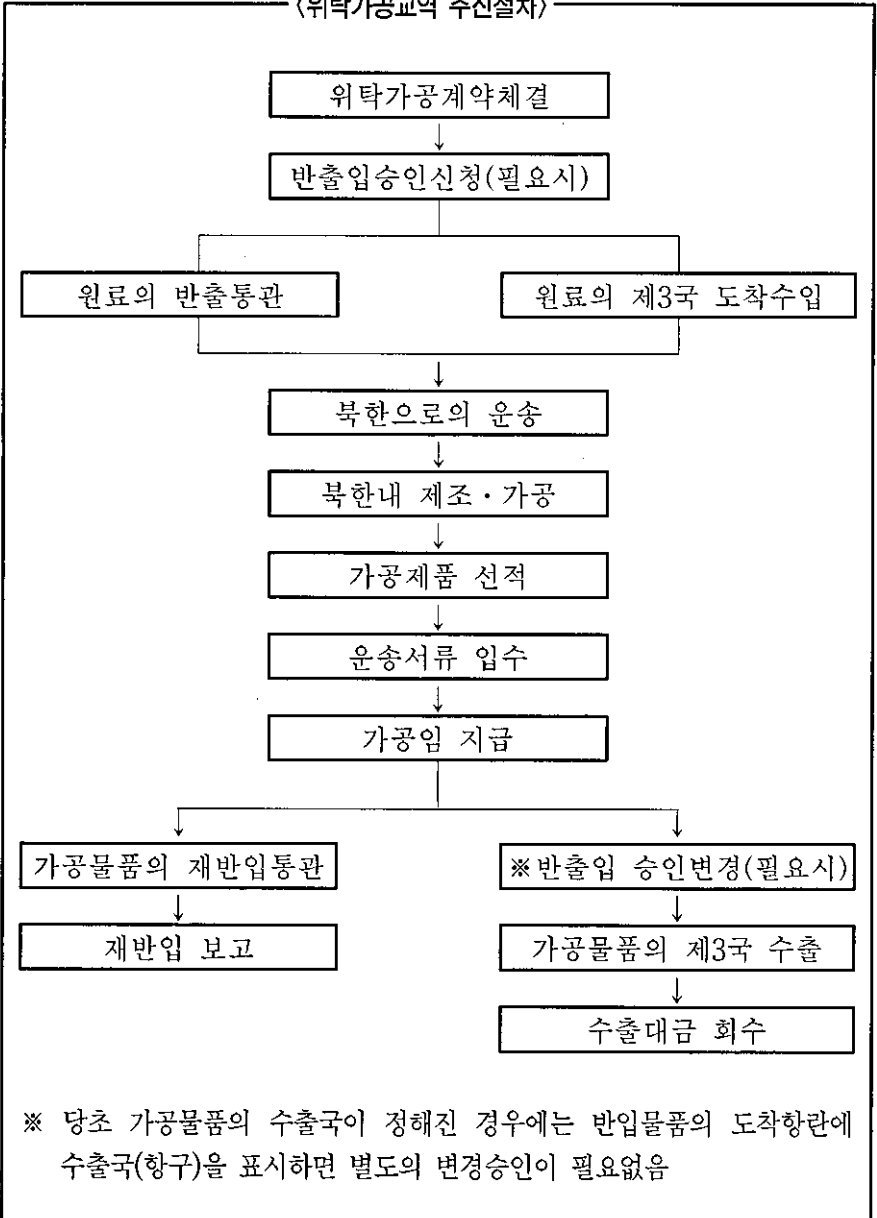
남북한간의 위탁가공교역은 일반물품 반출·입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다만, 시설재를 공급하는 위탁가공교역에 있어 기계·장치·설비 공급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으로 보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제3조)

-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수입에 허가·승인·신고·확인·증명 등의 제한이 있는 물품
- 임대 또는 무상으로 반출·입하는 경우
- 외환거래법 제4장 지급과 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지급과 거래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하는 원·부자재 및 그 위탁가공으로 생산하여 반입하는 물품은 무상반출입 등 거래형태로 인해 반출입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위탁가공교역에 있어서는 승인절차 없이 반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반출입에 제한이 있는 품목은 제외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위탁가공교역 추진절차〉



3. 남북협력기금 지원 제도

경제협력사업자금과 반출·반입자금 지원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3호에 의해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근거하며, 이에 따라 대북 투자, 교역·위탁가공에 대한 기금지원을 위해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을 제정('99.10.27)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 지원대상

(1) 경제협력사업자금

북한주민과 기술·자본·인력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으로 한다.

(2) 반출·반입자금

북한으로 물품(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및 설비 포함)을 반출하거나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으로 한다.

나. 지원조건 및 지원제외 대상

경제협력사업자금 및 반·출입자금에 대한 자금별 용자 지원조건과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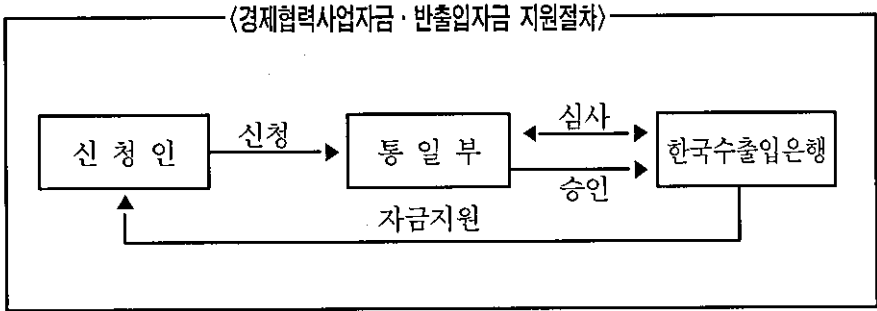
(1) 자금별 지원조건

자금종별	지원 한도	이 자 율	기 간	담 보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소요자금의 50%범위 내	연 6.0%	7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지급보증서 등
반출 · 반입 자금 대출 · 교역대상물품 반출자금	소요자금의 50%범위 내	연 6.0%	1년 이내	지급보증서 등
·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	소요자금의 50%범위 내	연 6.0%	1년 이내	지급보증서 등
·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	소요자금의 50%범위 내	연 6.0%	3년 이내 (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지급보증서 등
· 교역대상물품 반입자금	소요자금의 50%범위 내	연 6.0%	1년 이내	지급보증서 등

(2) 지원제외 대상

- 30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경제협력사업자금에 한함)
-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자가 해외 현지법인인 경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대외거래 · 외국환관련 법률의 위반으로 형사적 · 행정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통일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예외취급 가능)
- 기금의 지원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대상자
- 다음의 대출제한기업에 해당하는 자(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승인을 얻어 예외취급 가능)
 - 주채권은행이 “회생불가”(중소기업의 경우 “기타기업”), “정상화불가”로 분류한 기업
 - 최근 3년 이상 연속 결손 발생기업
 - 대출승인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완전잠식기업
 -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
- 본기금 이외의 금융자금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

다. 지원절차



경제협력사업자금 및 반출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은 자금 대출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통일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출신청에 대해 통일부는 한국수출입은행과 자금 대출에 대한 심사를 거쳐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신청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신 청 서 류)

- 자금대출신청서(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 자금대출신청서 첨부서류
 - － 사업승인서 사본 1부
 - －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사본)
 - － 대출신청 내용(소정양식)
 - － 이사회기결결의서 1부(소정양식)
 - － 차주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소정양식)
 - － 제작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소정양식)
 - － 사업상대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소정양식)
 - － 남북한 관계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 정부는 기금지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기업의 효율적인 대북사업 추진을 위한 고객중심의 기금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정책자금적 기능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다.

<참고자료>

■ 남북교역의 역사

일 자	주 요 내 용
'88. 7. 7	○ 「7·7선언」 발표
'88.11.14	○ 최초 반입승인(대우, 도자기 519점, 104천불)
'89. 1.26	○ 최초 반입통관(효성물산, 전기동 200톤, 660천불)
'89. 6.12	○ 「남북교류협력에관한지침」 제정
'89. 2. 4	○ 최초 반출승인(현대상사, 잠바 5,000벌, 69천불)
'90. 8. 1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정 ○ 「교류협력기금법」 제정
'90. 8.13	○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제정
'90. 8.31	○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 제정(관세청)
'90. 9.25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제정
'90. 9. 4~ '92. 9.18	○ 제1~8차 남북고위급 회담
'91. 5. 6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미술품·우표·화폐 등을 반입제한품목으로 분류
'91. 7. 1	○ 교류협력국 창설 ○ 반·출입승인 1억불 돌파(반입 105백만불, 반출 12백만불)
'91.12.10 ~12.13	○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제5차 고위급회담)
'92. 1.16 ~ 1.26	○ 대우 김우중 회장 북한방문
'92. 9.17 ~ 9.18	○ 「3개 부속합의서」 채택(제8차 고위급회담)
'92. 9	○ 최초 위탁가공교역(코오롱상사, 셔츠 6,216벌, 38천불 반입)
'92.10. 5	○ 최초 협력사업자 승인(대우)
'93. 3.12	○ 북한 NPT탈퇴선언
'93. 3.19	○ 이인모 송환
'93. 7	○ 반출·입승인신청서류 간소화(재무제표 등 참고자료 제출 생략)

■ 남북교역 실무안내 ■

일 자	주 요 내 용
'94. 2. 5	○ 「남북교역물품통관규정」 제정(관세청)
'94. 6.20	○ 「남북한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제정
'94.12. 1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승인절차 명시
'94.12.31	○ 반·출입 통관누계 7억불 기록
'95. 1. 3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WTO체제 출범 관련 품목구분
'95. 4	○ 「남북한교역대상물품통관관리지침」 제정 - 남북교역물품의 통관절차 간소화
'95. 4. 1	○ 남북교역 상담창구 확대 - 무역협회 부산지부 등 10개 지부에 남북교역 상담창구 개설
'95. 5	○ 최초의 협력사업 승인(대우)
'95. 6.25 ~10. 7	○ 쌀 15만톤 대북 지원
'95.12.31	○ 반·출입 교역규모 연 2억불 돌파
'95.12.15	○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96. 1.26	○ 최초 합영회사 설립(대우 ↔ 민족산업총회사)
'96. 3. 5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HSK분류표 개정에 따른 품목개정
'96. 5.13	○ LG 대북임가공으로 생산한 컬러TV 첫반입
'96. 7. 6	○ 대우 기술자 최초 방북승인
'97. 1.15	○ 소형선박(2,000톤급 미만)의 인천항 입항금지조치 해제
'97. 4. 1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절차 폐지에 따른 절차 변경 등
'97. 7.10	○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항 승인 절차 간소화
'97. 9.13	○ 북한 영공개방 합의
'97.12.31	○ 남북교역 규모 연 3억불 돌파(누계 15억5천만불)
'98. 1.12	○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 - 남북교역의 직교역화 및 위탁가공교역의 확대 추진
'98. 2.25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촉구(대통령 취임사)
'98. 3. 2	○ 최초 평양 FIR 통과항로 시범운항(대한항공)

일 자	주 요 내 용
'98. 4.23	○ 대구/평양 FIR 통과항로 개설
'98. 4.30	○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발표 - 생산설비의 반출제한 폐지 등
'98. 6.16 ~ 6.23	○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 판문점 통과 북한방문 - 한우 500두, 차량 50대 반출('98년말 현재 한우 1,001두, 차량 100대 반출)
'98. 6.19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 축소(205개 → 178개) 등
'98.11.17	○ 금강산 관광 지원 통신망 개설(6회선)
'98.11.18	○ 금강산 관광선 첫 취항('98년말 현재 23회운항, 10,544명 관광)
'98.12.31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고시」 개정 - 교류협력관련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
'99. 2. 4	○ 판문점 임시 세관검사 및 출입심사 사무소 설치 (남북회담사무국 전방사무소)
'99. 2. 4 ~ 2. 6	○ 정주영 명예회장 등 일행 7명 판문점 경유 왕래 - 차량(다이내스티 1대) 반출확인 및 휴대품 검사 출입심사
'99. 3. 9 ~ 3.11	○ 정주영 명예회장 등 일행 5명 남북왕래
'99. 5.18	○ 금강산관광사업 관련 통신회선 증설(2회선, 총 8회선)
'99. 6.10	○ 교류협력국 교류3과를 교역과로 개칭 - 협력사업용 물자의 반출입승인업무는 협력사업 주관과로 이관 - 인도지원물자 반출입승인업무는 인도지원국으로 이관
'99. 8.16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반출입승인을 요하는 품목 조정(178 → 182개)
'99.10.27	○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제정 - 대북투자, 교역·위탁가공에 대한 기금지원 기준 마련
'99.12.15	○ 대북경수로 건설사업 본공사 승인

일 자	주 요 내 용
2000. 1. 7	○ 평화자동차 자동차 수리·개조 및 조립공장 설립 승인
2000. 3.13	○ 삼성전자 남북 S/W 공동개발사업 승인
2000. 4.28	○ 「남북위탁가공교역협의회」 창립
2000. 6.13 ~ 6.15	○ 남북정상회담(평양) - 남북경제협력 등 5개분야 합의(남북공동선언 채택)
2000. 7.24	○ KEDO 사업 지원용 통신 2회선 증설(총 10회선)
2000. 7.29 ~ 7.31	○ 제1차 남북장관급 회담(서울)
2000. 8.11	○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과 북측 「통일각」 간에 광케이블 설치
2000. 8.15 ~ 8.18	○ 제1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서울·평양 각 100명)
2000. 8.22	○ 현대아산 개성공단 조성 합의서 체결
2000. 8.29 ~ 9. 1	○ 제2차 남북장관급 회담(평양)
2000. 9.18	○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기공식
2000. 9.22 ~ 9.28	○ 백두산·한라산 교차관광(백두산)
2000. 9.24 ~ 9.26	○ 제1차 남북 경제협력 실무접촉(서울) -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 경험제도화 문제 논의
2000. 9.24 ~ 9.26	○ 제1차 남북국방장관 회담(제주)
2000. 9.26	○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체결 - 쌀 30만톤, 옥수수 20만톤
2000. 9.27 ~ 9.30	○ 제3차 남북장관급 회담(제주)
2000. 9.28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반출입승인을 요하는 품목 조정(182→185개)
2000.10. 2	○ 남북간 신문교환

<부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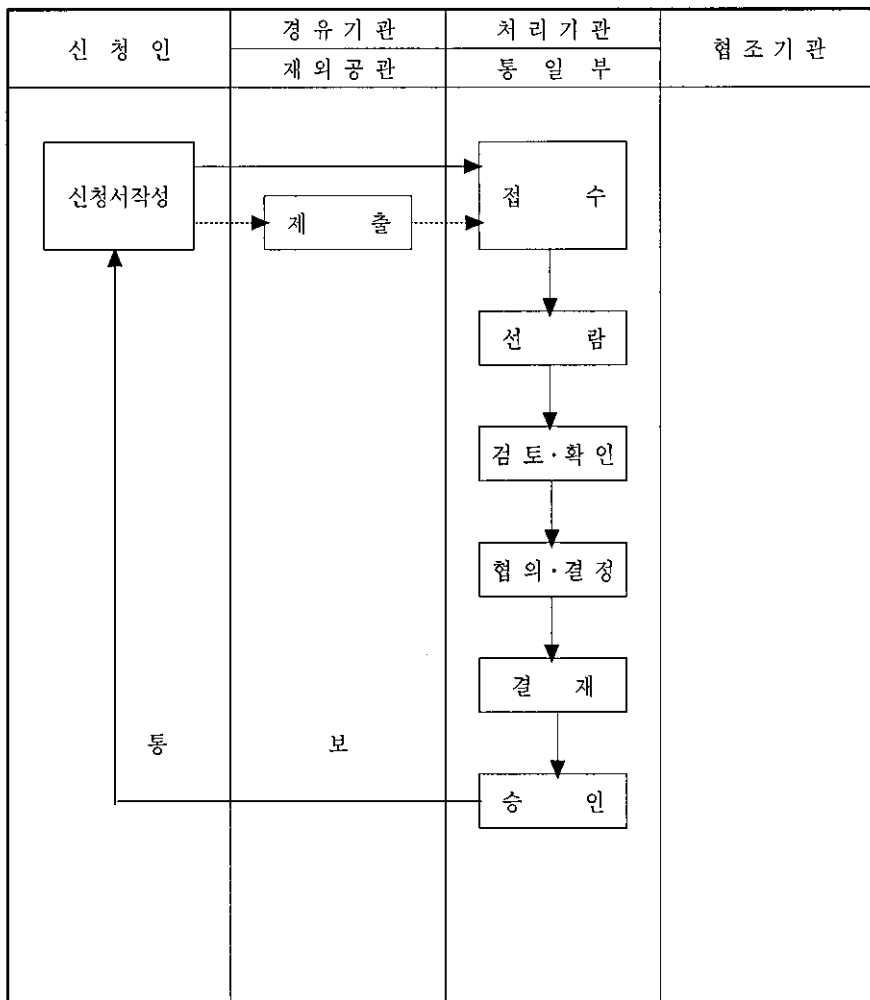
■ 남북교역 관련 서식

1. 북한주민접촉 및 북한방문 관련서식	71
■ 북한주민접촉신청서	71
■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73
■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74
■ 남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76
■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	78
■ 방문기간연장신청서	80
■ 북한방문신고서	82
■ 북한방문결과보고서	84
2. 남북교역 및 수송장비운행 관련서식	85
■ 북한물품반입승인신청서	85
■ 대북한반출승인신청서	87
■ 반출입승인신청서	89
■ 반출입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	91
■ 교역보고서	93
■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	94
■ 수송장비운행승인서	96
■ 수송장비운행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	97
3. 자금대출 신청서	98

첨부서류 : 1. 신원진술서

2.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북한 방문 증명서 발급 신청서

(앞면)

처리기간 20일

①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성별	남·여	사 전	3.5cm×4.5cm
	주민등록번호				신장	cm		
	주소·연락처	(전화:)						
	직업 소속		직위	(전화:)				
② 동반자녀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성별	신장	사 전	사 전		
				cm	2.5cm×3cm	2.5cm×3cm		
				cm				
③ 방 문 대 상 자 인적사항	성 명	나 이	거 주 지		소속 및 직위	관계		
④ 방문목적								
⑤ 방문경위 (초청장, 방문알선 및 중개인포함)								
⑥ 방문예정 일정(일시, 방문지역)								
⑦ 방문 및 귀환예정경로								
⑧ 방문경험 (과거 3년이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발급을 신청하며, 이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기간 및 그 전후에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공공복리 및 남북한 관계개선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첨부서류: 뒷면

년 월 일

신 청 인 :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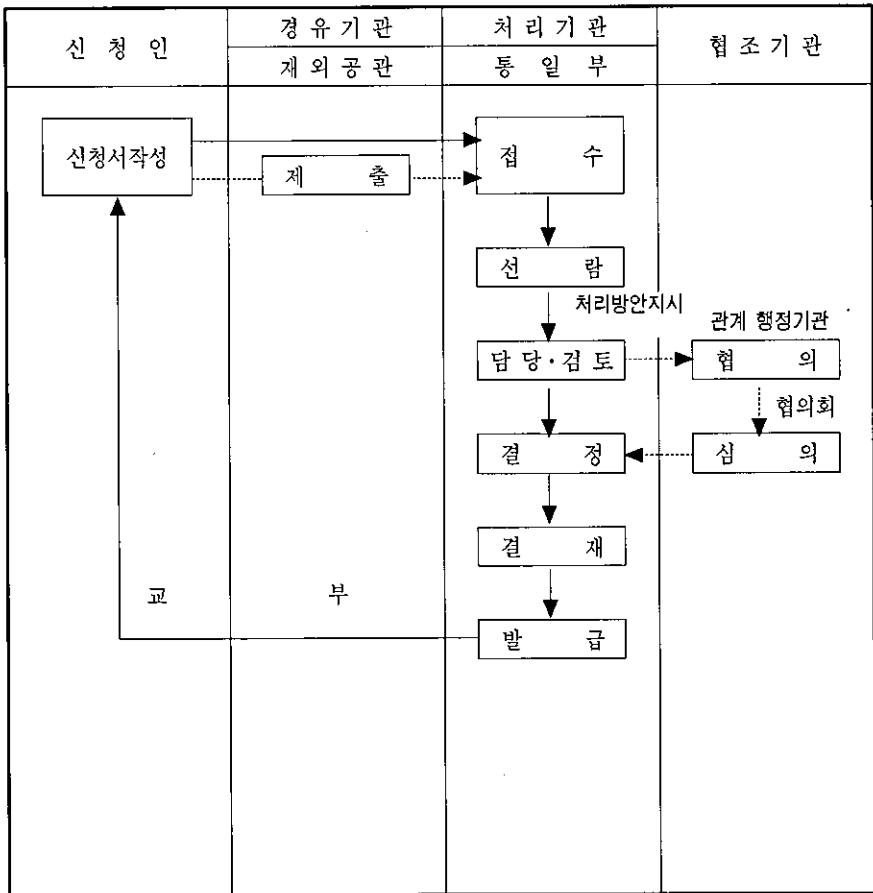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수 수 료
없 음

첨부서류 : 1. 신원진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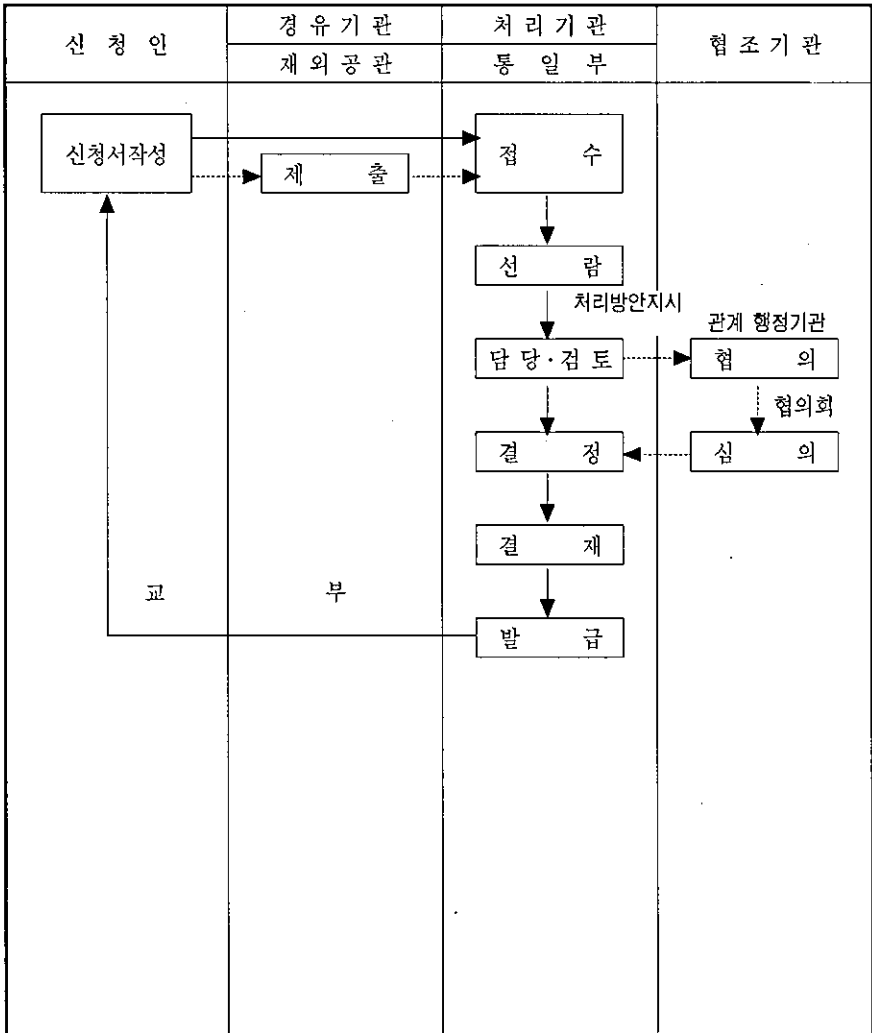
2. 방문증명서용 사진 4매(동반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동반자녀의 사진 4매 포함)
3. 병역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해당자에 한함)
4.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5.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첨부서류 : 1. 방문증명서용 사진 4매(동반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동반자녀의 사진 4매 포함)
 2.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

<앞면>

처리기간	5일
------	----

① 인적사항	성명	(한자:)	성별	남·여	사 진 3.5cm×4.5cm
	구증명서번호		생년월일		
	주소·연락처	(전화:)			
	방문지				

② 재발급 사유	
----------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을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증명서의 재발급 신청하여, 이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에 서약한 사실을 준수할 것입니다.

첨부서류 : 뒷면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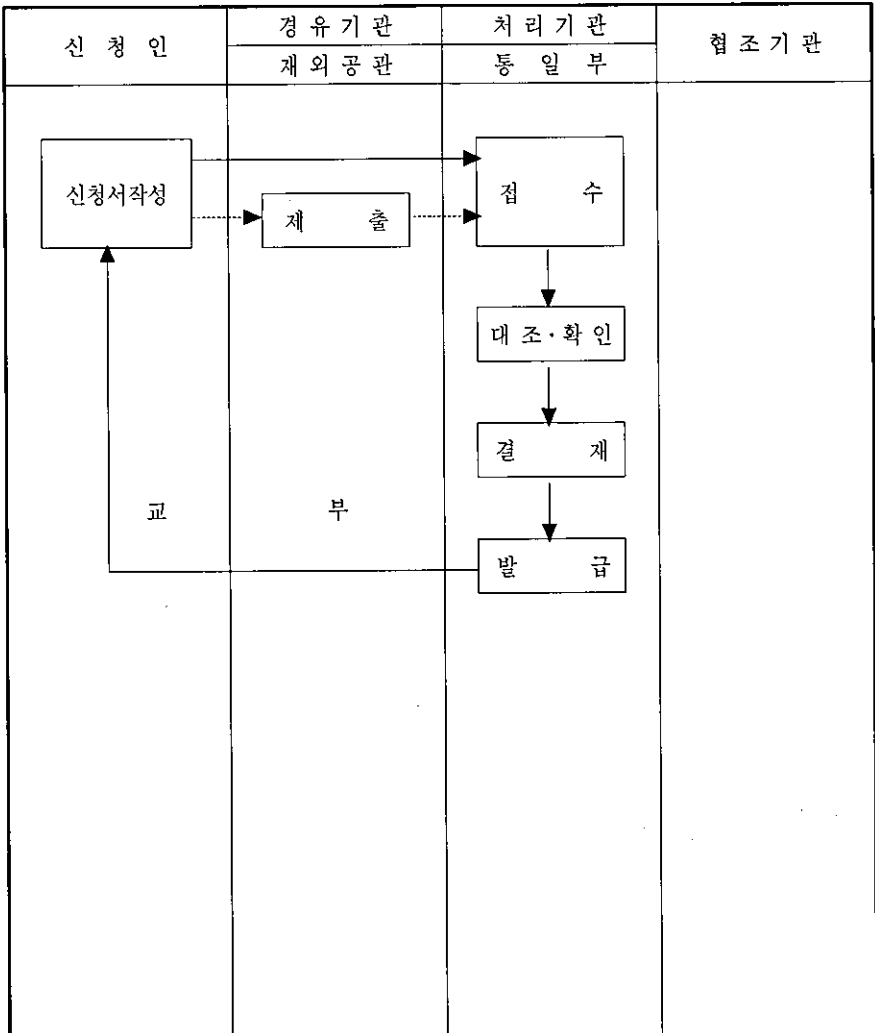
신청인: (인)

통일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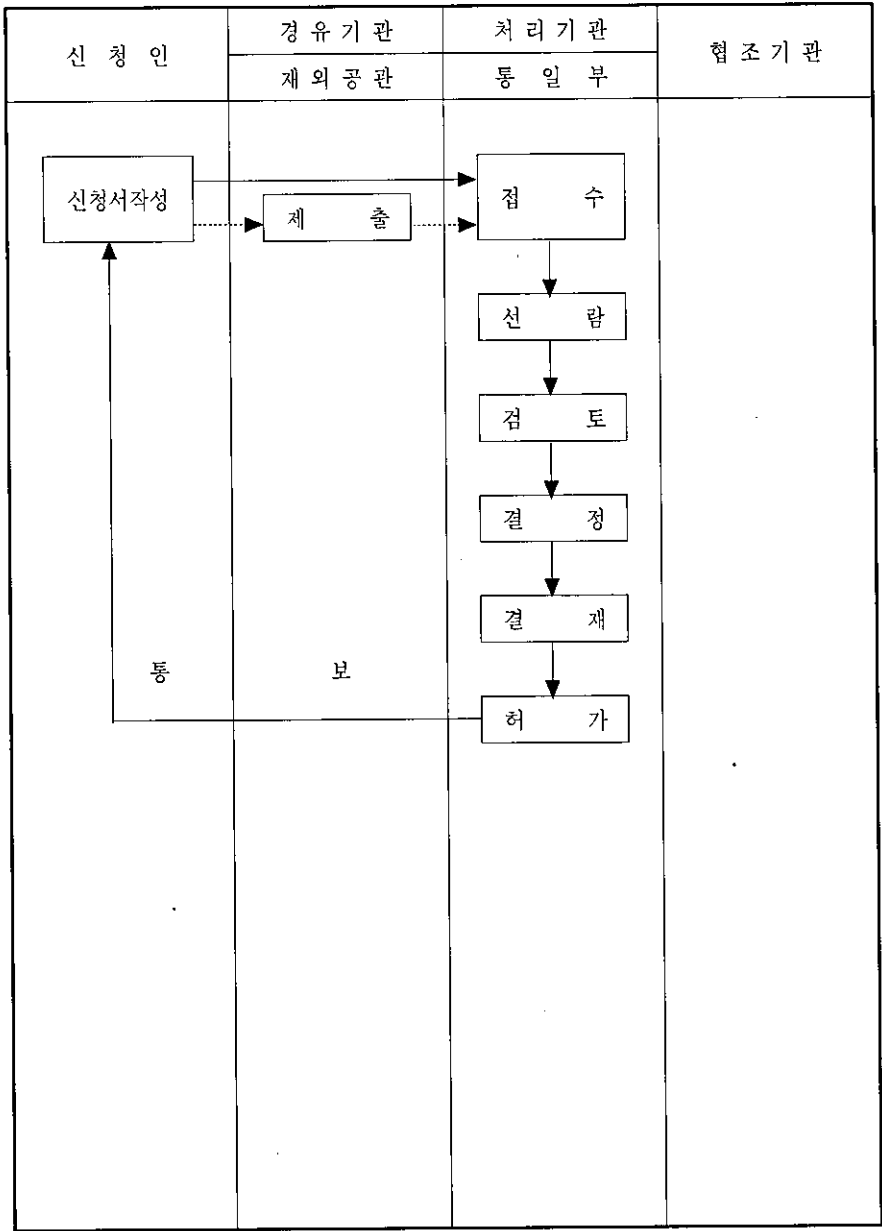
수수료
없음

- 첨부서류 : 1. 증명서 재발급용 사진 2매
 2.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면〉



북한 방문 신고서

신고번호 :

신고일자 : 년 월 일

① 신 청 인	성 명				성 별	남·여
	생 년 월 일					
	주소·연락처				전화번호	
	직 장				전화번호	
② 방북증명서 발급번호						
③ 방 문 경 위 (입북비자획득등)						
④ 방문목적(사유)						
⑤ 방문기간(일정)						
⑥ 방 문 경 로 (경유지포함)						
⑦ 여행지내 연고자 또는 접촉인물	성 명	나 이	거 주 지	소속 및 직위	관 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
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을 신고하며,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 국가이익에 해가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첨부서류 :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 사본 1부 또는 초청장 원본 1부

신 청 인 :

㉠ (또는 서명)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수 수 료
없 음

- *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합판 사진
- * 신고번호는 공관별 전문 전치부호 - 신고년도(마지막 두자리)
 - 공관별 신고접수·순위로 공관에서 기재
 - (예 : 주한미대사관 US-88-001. 주일대사관 JA-88-125)

북한 방문 신고서					
신고번호 :			신고일자 : 년 월 일		
① 신 고 자	성 명			성 별	남 · 여
	생 년 월 일				
	주 소 · 연 락 처			전 화 번 호	
	직 업			전 화 번 호	
사 진 (반명합판) 3cm×4cm					
② 여 권 번 호			여권유효기간		
③ 방 문 경 위 (입북비자획득등)					
④ 방 문 목 적 (사유)					
⑤ 방 문 기 간 (일정)					
⑥ 방 문 경 로 (경유지포함)					
⑦ 여 행 지 내 연 고 자 또 는 접 촉 인 물	성 명	나 이	거 주 지	소 속 및 직 위	관 계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방문을 신고하며,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 국가이익에 해가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p> <p>첨부서류 : 제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p> <p style="text-align: right;">신 고 인 : ④ (또는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대 사 (총 영 사) 귀 하</p>					

11022-01011민
90.10.12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80g/m²

북한방문결과보고서

① 보고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사진 3cm×4cm
	주소·연락처	(전화:)				
	직업					
	여권번호					
② 방문대상자 (방문기관 (3인부터는 별지작성))	성명	소속 및 직위			기타	
③ 방문목적						
④ 출발일				⑤ 귀환일		
⑥ 방북신고 미필사유						
⑦ 방문 및 귀환경로						
⑧ 방 문 일 정						
년 월 일	방 문 지 역			활동내용 및 면담자		
※ 세부활동내용 및 참고사항은 별지작성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첨부서류: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작 성 자: ㉠ (또는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대 사 (총 영 사) 귀 하</p>						

11022-008111
90.10.12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복급)80g/m²

2. 남북교역 및 수송장비운행 관련서식

북한물품반입승인신청서

(용)

처리기간	20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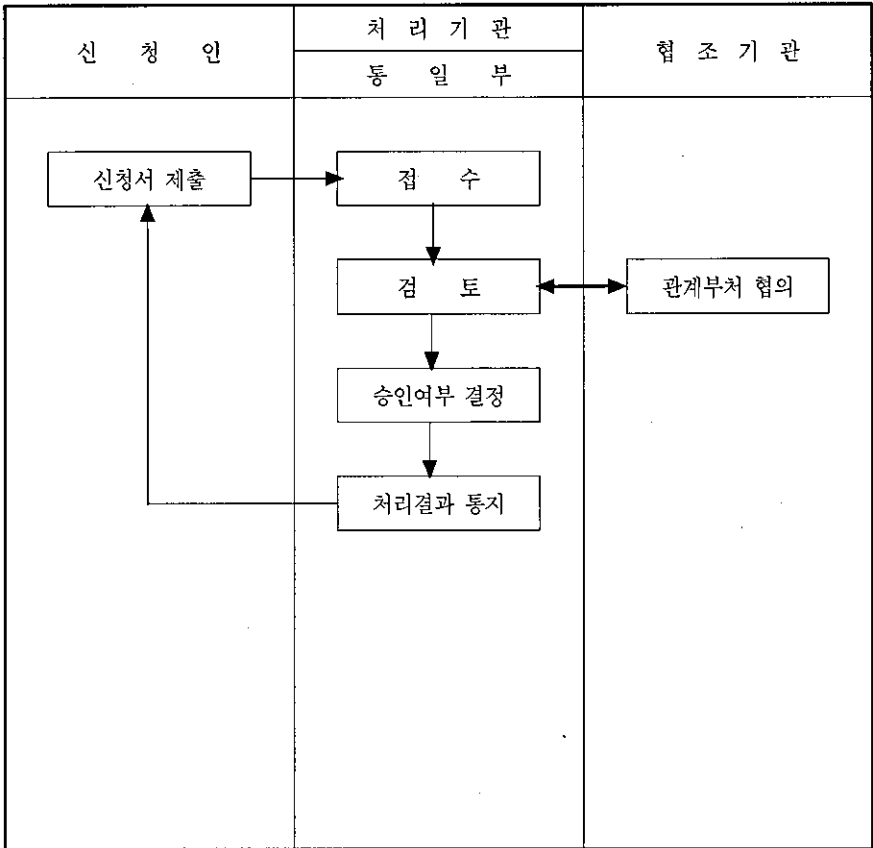
① 반입자(상호·주소·성명·전화) 무역업 신고번호		⑤ 송 화 인
(인)		⑥ 결재조건
② 위탁자(상호·주소·성명·전화) 사 업 자 등록번호		대금결제방법 : 신용장(), 추심어음() 송금환() 기 타()
		금 액
③ 원 산 지		결 제 기 간
④ 선 적 항		⑦ 가격조건
⑧ HS부호	⑨ 품 목 및 규 격	⑩ 단위 및 수량
		⑪ 단 가
		⑫ 금 액
⑬ 승 인 조 건		
⑭ 승인유효기간		
⑮ 승 인 번 호		
위의 신청사항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첨부서류 : 뒷면 <div style="text-align: center;">19</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통 일 부 장 관</div>		

32313-053111
99.6.30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80g/m²

- 첨부서류 : 1. 북한물품반입승인신청서 5부
 2. 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1부
 (간접교역인 경우 중개인과 북한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 포함)
 3. 반입대행계약서 1부(반입자와 위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4. 특정물품 취급면허증 사본 1부(해당물품에 한함)
 5.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대북한 반출승인신청서

(용)

처리기간	20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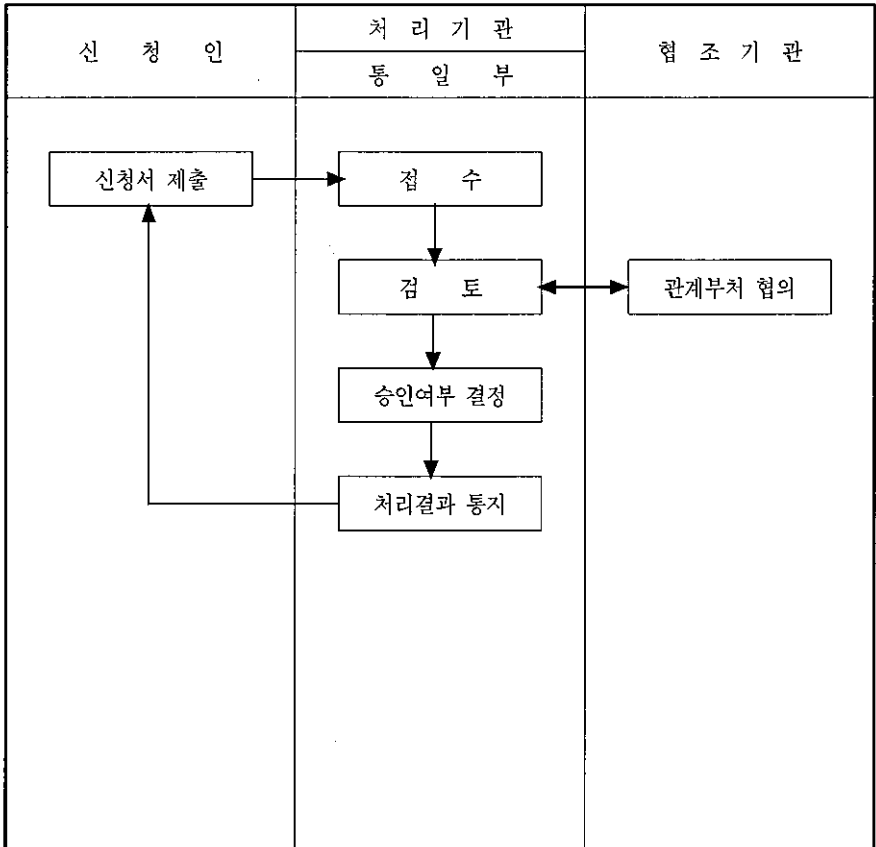
① 반출자(상호·주소·성명·전화)	무역업 신고번호		⑥ 수 취 인		
(인)			⑦ 결제조건		
② 위탁자(상호·주소·성명·전화)	사업자 등록번호		대금결제방법 : 신용장(), 추심어음() 송금환() 기 타()		
③ 원 산 지	금 액				
④ 선 적 항	결 제 기 간				
⑤ 도 착 항	⑧ 가격조건				
⑨ HS부호	⑩ 품 명 및 규 격	⑪ 단위 및 수량	⑫ 단 가	⑬ 금 액	
⑭ 승 인 조 건					
⑮ 승인유효기간					
⑯ 승 인 번 호					
<p style="text-align: center;">위의 신청사항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첨부서류 : 뒷면</p> <p style="text-align: center;">19</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부 장 관</p>					

32313-05411민
99.6.30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80g/m²

- 첨부서류 : 1. 대북한반출승인신청서 5부
 2. 반출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1부
 (간접교역인 경우 중개인과 북한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 포함)
 3. 반출대행계약서 1부(공급자와 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4. 특정물품 취급면허증 사본 1부(해당물품에 한함)
 5.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반출입 승인신청서

(용)		처리기간	20일
① 신청인(상호·주소·성명·전화) 무역업 신고번호 (인)		⑦ 신용장 또는 계약서번호	
② 위탁자(상호·주소·성명·전화) 사업자 등록번호 (인)		⑧ 결제조건 대금결제방법 : 신용장(), 송금환() 추심어음() 기 타()	
③ 송화인		⑨ 금액 결제기간 ⑩ 가격조건	
반 출 반 입		⑪ 결제조건 대금결제방법 : 신용장(), 송금환() 추심어음() 기 타()	
④ 원산지		⑫ 금액 결제기간 ⑬ 가격조건	
⑤ 선적항		⑭ 단위 및 수량 ⑮ 단 가 ⑯ 금 액	
⑥ 도착항		반입물품의 명세 ⑰ HS부호 ⑱ 품 명 및 규 격 ⑲ 단 위 및 수 량 ⑳ 단 가 ㉑ 금 액	
반출물품의 명세 ㉒ HS부호 ㉔ 품 명 및 규 격 ㉓ 단 위 및 수 량 ㉕ 단 가 ㉖ 금 액			
㉗ 승 인 조 건			
㉘ 승인유효기간 반출 : 반입 :			
㉙ 승 인 번 호			
위의 신청사항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첨부서류 : 뒷면 19 통 일 부 장 관			

32313-05511핀
99.6.30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70g/m²

첨부서류 : 1. 반출입승인신청서 5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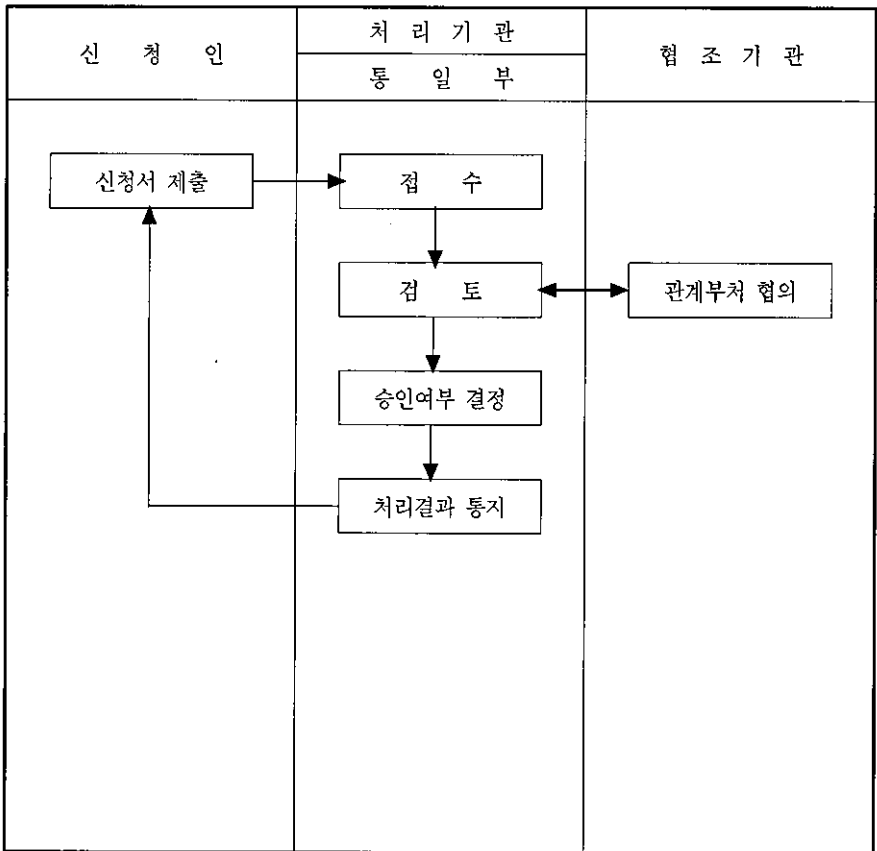
2. 반출·반입계약서 1부

(반출·반입을 한 계약서에 작성하되, 별도의 계약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2개의 계약을 연계시키는 의정서(protocol)를 첨부)

3. 이행보증 또는 환급보증(필요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반출입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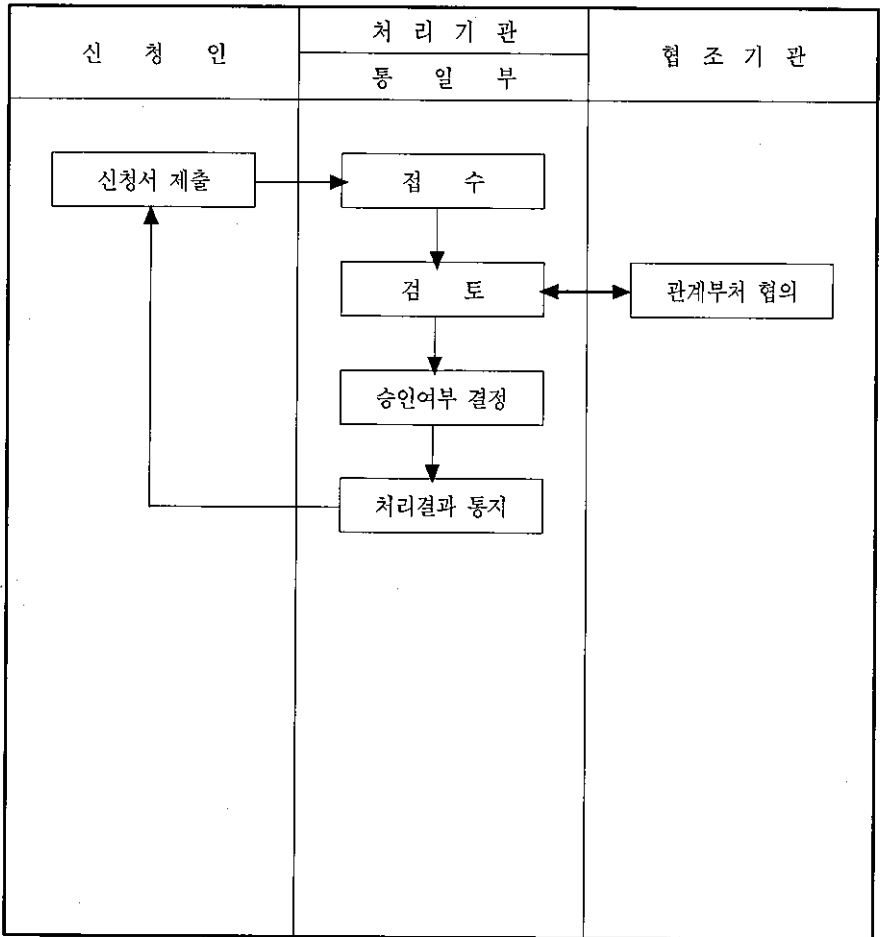
① 신청인(상호·주소 ·성명·전화) 무역업 신고번호	② 변경전 승인일자 ③ 변경전 승인번호 ④ 승인사후관리은행명
⑤ 변경내용(변경을 요하는 사항만을 기입하십시오.)	
변 경 전	변 경 후
⑥ 승 인 조 건	
⑦ 승인유효기간	
⑧ 승 인 번 호	
<p style="text-align: center;">위의 신청사항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첨부서류 : 뒷면</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19</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통 일 부 장 관</p>	

32313-05611민
99.6.30 개정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70g/m²

- 첨부서류 : 1. 반출입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 5부
 2. 변경계약서 1부
 3. 변경승인신청 사유서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교역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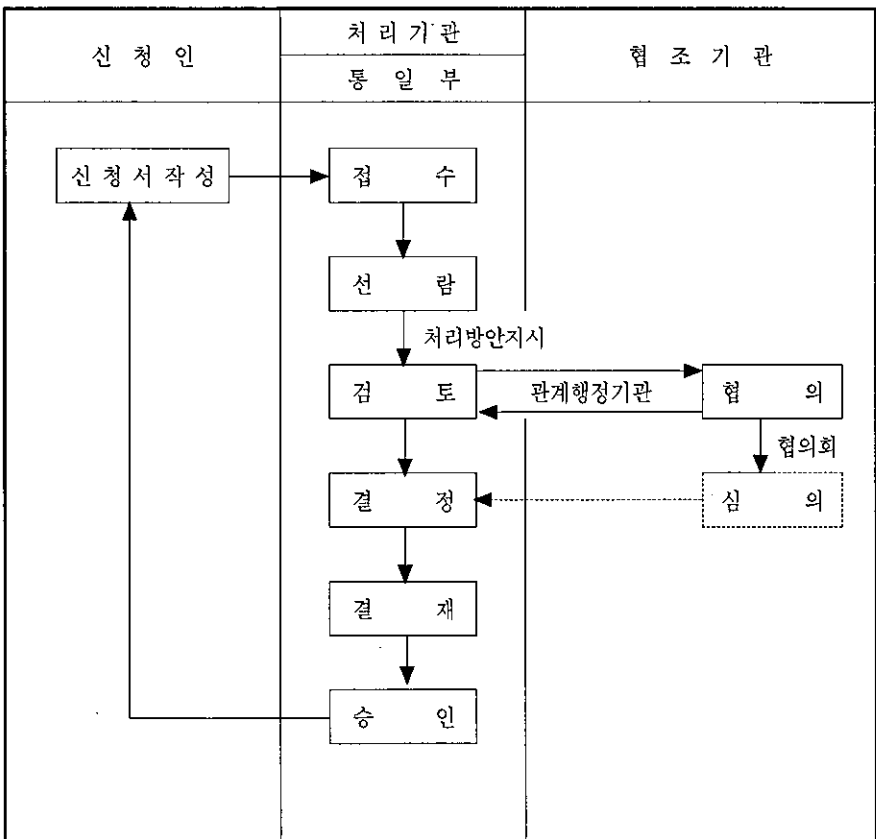
보고자	① 상 호		② 무역업신고번호	
	② 주 소		④ 전 화 번 호	
	③ 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보고사유				
보 고 개 요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보 고 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부 장 관 귀하</p>				
<p>구비서류: 1. 반출·입 실적 1부 2. 보고개요의 상세한 내용 1부</p>				

11022-01011번
90.10.12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70g/m²

- 첨부서류 : 1. 운행계획서(운행경위를 포함한다)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수송장비의 제원 내역서(사용할 수송장비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보할 수송장비의 재원과 확보방법 및 기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부
 3.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서류(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4. 영 제43조 제5호의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각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수 송 장 비 운 행 승 인 서

		처리기간	30일
상 호 (명 칭)		운행승인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수송장비의 종류		수송장비명칭	
운 행 노 선			
운 행 승 인 유효 기 간			
운행승인구분	정 기	회 부정기	회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와 같이 남북한간에 수송장비의 운영을 승인합니다.</p> <p style="margin-top: 50px;">년 월 일</p> <p style="margin-top: 50px;">통 일 부 장 관</p>			

11022-01511일
90.10.12 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특급)120g/m²

<부록 2>

■ 남북교역 관련 법규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101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109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127
4.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130
5.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132
6.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139
7.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149
8.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151
9.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158
10.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165
11.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170
12. 남북협력기금법	183
13.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187
14.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193
15.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195
16.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215
17.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	223
18.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 관한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227
19. 남북교류·협력 공동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합의서	235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제정 1990. 8. 1 법률 제4239호
- 개정 1990. 12. 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 1992. 12. 8 법률 제4522호(출입국관리법)
- 1994. 12. 31 법률 제4850호(대외무역법)
- 1996. 12. 30 법률 제5211호(대외무역법)
- 1997. 12. 13 법률 제5454호(정부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입장소”라 함은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남한의 항구·비행장 기타 장소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4 조(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남북과 북한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이하 “남북 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 5 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③ 위원은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협의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 6 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허가·승인 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
3. 교역대상품목의 범위 결정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5.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
6.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조추진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7 조(협의회의 의사)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9 조(남·북한 왕래) ①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 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와 신고절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해외동포 등의 출입보장)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해외거주동포가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11조(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 출입장소에서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교역당사자) 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하되, 통일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역당사자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교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교역대상물품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을 요하는 품목 또는 금지품목의 구분
2. 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관한 제한내용 및 승인절차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교역에 관한 협정의 준수나 물품의 반출·반입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사업자) ①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과 승인취소사유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사업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

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의 승인요건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남북 교류·협력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자에게 그가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의 시행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결제업무의 취급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수송장비 등의 출입관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과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통신역무의 제공) ①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자·종류·요금·취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검역 등) ① 북한으로부터 내항하는 선박·항공기·하물은 검역조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6조 내지 제28조 및 제33조 내지 제35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 또는 가검역증의 교부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오는 자중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자와 전염병균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는 국립검역소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 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1. 외국환관리법
2. 외자도입법
3. 한국수출입은행법
4. 수출보험법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 조세감면규제법
9.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받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급받거나 제9조제3항, 제13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을 운행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제29조(형의 감경 등) 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북한주민의제) 이 법(제9조제1항 및 제11조를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이를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부칙생략>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 제정 1990. 8. 9 대통령령 제13071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
(통일원파고소속기관직제)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8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1993. 3. 6 대통령령 제 13870호
(상공자원부파고소속기관직제)
1993. 3. 30 대통령령 제13872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8호
(교통세법시행령)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재정경제원파고소속기관직제)
1995. 12. 6 대통령령 제14819호
(병역법시행령)
1996. 5. 31 대통령령 제15006호
(외국환관리법시행령)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
(해양수산부파고소속기관직제)
1997. 12. 15 대통령령 제15539호
(우편법시행령)
1998. 10. 23 대통령령 제15920호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장소)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1. 판문점
 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
 3. 개항질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항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개항
 4.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2 장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 3 조(협의회의 회의) 위원장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5 조(수당 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 위원장이 상정할 의안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1급 내지 3급 국가공무원(1급 내지 3급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제7 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 위원장이 지시한 협의회 의안의 사전 검토·조정
2.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실무협조사항
4.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 조(준용규정 등) ①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남북한 왕래 등

제9 조(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는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눈다.

② 방문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부를 표기한다.

③ 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북한방문증명서 : 갈 색·4면
2. 남한방문증명서 : 청남색·4면

④ 방문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증명서번호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2. 성 명
3. 성 별
4. 생년월일
5. 방문목적
6. 방문기간
7. 신 장
8.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왕래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3년의 유효기간 범위안에서 횡수의 제한없이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증명서의 면수는 10면으로 한다.

제10조(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남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 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 4매
4.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다만, 60일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한다.
5.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6.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②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진·서류 또는 자료

③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4호·제6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자료를 방문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신청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리신청) ① 대리인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② 대리인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 가. 본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나. 초청장 사본 등 초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12조(증명서발급의 협의) 통일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받는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제공) 통일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자에게 필요한 안내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가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동반자녀의 병기)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14세미만의 자녀를 동반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방문증명서에 자녀의 동반을 병기할 수 있다.

제16조(방문기간) ① 통일부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그 방문 목적에 따라 1년6월이내의 방문기간을 정하여 방문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기간은 당해 방문증명서의 최초의 방문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증명서의 반납 등) ① 방문증명서를 소지하고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한 자가 귀환할 때에는 출입장소에서 방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북한방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북한을 방문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방문증명서를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발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재외국민의 북한 왕래신고)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는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출발하기 5일전 또는 귀환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2.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삭 제>

제19조(접촉승인신청)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촉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한 왕래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접촉을 제외한 회합·통신 기타 방법의 접촉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접촉 15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접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후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에 이를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2.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3. 가족(8촌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목적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한 자
4.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5. 편지의 접수 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제20조(특례조치) 통일부장관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 및 협회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4조,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1조(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22조(출입심사) ① 법 제11조에서 심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원확인
2. 휴대한 물품 등의 검사
3. 검역
4.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5.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출국금지의 확인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은 통일부장관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심사 업무 중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심사확인) ① 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심사를 받은 자가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출국금지자로 확인된 자의 왕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의한다.

제24조(휴대금지품의 고시) 통일부장관은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종류·수량 및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의 처리방법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장 교역

제25조 <삭제>

제26조(반출·반입의 승인신청)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형태 및 대금결제방법을 미리 정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개별적 승인에 갈음하여 물품 또는 대금결제방법 등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형태·대금결제 방법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이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법 제13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1. 금액의 변경. 다만, 동일한 물품으로서 10%이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금결제방법의 변경
3. 반출·반입 유효기간의 연장
4. 반출·반입 승인조건의 변경

제27조 <삭 제>

제28조 <삭 제>

제29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당사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협력사업

제30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요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최근 3년이내에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제31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제30조의 규정

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협력사업자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호(협력사업자 승인의 취소) 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30조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을 얻은 사업외의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행한 경우
4.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5.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6. 협력사업의 시행중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7.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3조(취소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취소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해당 협력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협력사업자는 승인의 취소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4조(협력사업의 승인신청) ① 협력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4. 북한 당국의 확인서
5.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제1항 각호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협력사업의 승인요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2.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북한간에 분쟁을 일으킬 상당한 사유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자의 능력과 협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 부합될 것.
5.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36조(협력사업의 승인) ① 통일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을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당해 사업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36조의 2(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동시승인)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투자액·사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와 협력사업 승인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제37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2. 사업의 착수
3. 사업진행상황
4. 사업의 만료 또는 제1호의 약정 또는 계약의 해지·해제
5. 사업의 진행중 분쟁 또는 사고의 발생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사업진행상황은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후 20일이내에, 기타의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외국환 거래가 수반되는 교류 및 협력)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남한과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외국환의 거

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 보 칙

제40조(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외국환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4. 외국환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상 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제41조(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42조(수송장비운행의 승인신청)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운행의 승인기준) 남한과 북한간의 선박 등을 운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하여야 한다.

1. 운행목적에 부합하는 선박 등을 소지할 것.
2. 소지하고 있는 선박 등의 조작 또는 운행능력이 있을 것.

3. 선박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노선에 운행이 가능할 것.
4.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 등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을 받을 것.
5.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
6.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과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44조(협의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등의 운행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의 승인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삭 제>

제45조(운행승인서의 발급)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등의 운행을 승인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운행 승인서를 교부한다.

제46조(통신역무의 제공)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의 우편 역무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여 우편사업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남북한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남한과 북한간의 제공할 수 있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를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상우편물
2. 소포우편물
3. 전기통신

제47조(통신역무의 요금)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우편요금,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전기통신요금에 의한다.

제48조(통신역무의 취급절차)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편법·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제49조(수당 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의견의 진술, 자료의 제공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률을 준용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3. 국세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특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삭 제>

8. 교육세법

9. 식물방역법

10. 가축전염병예방법

④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은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 등으로 본다.

⑤ 관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관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본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정한 사항 외에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제51조(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①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의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들어오는 자의 휴대품·별송품으로서 왕래사유·체제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50조제2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방문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남북교류·협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 ①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제6호 내지 제8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북한에 물품을 반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の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협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생략>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0. 11. 9 총리령 제371호

개정 1991. 3. 27 총리령 제384호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1998. 6. 1 통일부령 제3호

(통일부소속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1 조(목 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① 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 3 조(재외국민 등의 신분증명)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대신에 여권을 제출할 수 있다.

제 4 조(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 영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 5 조(방문기간연장신청서) ①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방문기간연장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병역법에 의한 기간연장허가서를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북한방문신고서 등) ① 영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 방문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 6호서식에 의한다.

제 7 조(북한주민접촉신청서 등) ① 영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촉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후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8 조(출입신고서 등) 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자는 출입장소에서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확인인은 별표와 같다.

③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신고서를 제출할 때 병역법에 의한 신고필증 또는 허가필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 받은 출입심사공무원은 제출자명부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협력사업자승인증)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승인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수송장비운행승인서)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승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및 별표·별지 생략〉

4.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제정 1990. 8. 13 통일원고시 제90-1호
개정 1998. 12. 31 통일부고시 제1998-4호
개정 1999. 5. 28 통일부고시 제99-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 및 그 처리방법을 정하여 왕래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출입장소를 통하여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을 직접출입하는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에 적용한다.

제3조(반입금지품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을 불허한다.

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간행물·영화·음반·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2.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모조품
3. 총포·도검 및 화약류 등
4.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
5. 기타 출입심사공무원이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

제4조(반출금지품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을 불허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된 물품
2. 군사상 기밀 및 남한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3.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
4. 문화재관리법에 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

제5조(제한적 휴대금지품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반입이 허용된다.

1. 식품류(식품위생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물품)
2. 검역대상물품
3.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 의한 수출규제품목
4.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제 6 조(물품의 보관) 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휴대품보관증에 기재한 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제 7 조(보관물품의 처리)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면서 휴대한 물품 중 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보관된 물품은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8 조(과세 등에 대한 다른 법령의 준용) 제5조에 의한 반출입 승인을 받아 휴대한 물품이 세관장이 인정하는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 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세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부칙 및 별지 생략〉

5.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정 1990. 8. 31 관세청고시 제90-647호
개정 1998. 4. 13 관세청고시 제98-13호
(정부조직법등개정때따른고시·훈련등
개정에관한고시)
1998. 10. 26 관세청고시 제98-59호
1999. 5. 27 관세청고시 제99-22호

제1장 총 칙

제1 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2조 및 제52조와 관세법 제30조 제12호·제14호, 제137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남북한간 왕래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출입장소를 통하여 남·북한지역을 직접 출입하는 남·북한주민 및 외국인(이하 “남북왕래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휴대품 신고 및 검사

제3 조(휴대품신고서 제출) ① 남·북한왕래자는 입경할 때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방문증명서 또는 여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1인이 가족을 대표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은 남북한 왕래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대품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자는 제외한다.

제4 조(신고대상물품) ① 남·북한왕래자는 입경할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반입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입여부를 휴대품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한 후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산이 아닌 물품
2. 북한산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총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3. 제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특정물품의 반입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북한산 주류·담배·향수·농산물·한약재
4.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
5.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간행물·도서·영화·음반·조각물·사진·비디오 테이프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6.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7.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모조품
8. 총포·도검·화약류 및 유독성 물질류
9. 앵속·아편·코카인 등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제품
10. 동물(고기·가죽·털 포함)·식물·과일채소류·기타 식품류·농림축수산물
1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 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예: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매·올빼미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핸드백 등)

5.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②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지급수단 등의 신고를 받은 세관공무원은 외국환관리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5 조(휴대품 검사) ① 세관공무원은 남·북한왕래자의 휴대품 및 별송품에 대하여 검사한다.

② 제1항의 검사시 세관공무원은 반출·반입규제물품의 휴대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6 조(검사방법) ① 남·북한왕래자의 휴대품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X-RAY투시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신변 휴대품에 대하여는 금속탐지기에 의한 간접검사를 실시한다.

② 간접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거동이 수상하거나 휴대품을 과다하게 소지한 자 등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 장 휴대품 통관

제 7 조(여행자휴대품 인정범위) ① 세관장은 남북한왕래자의 방문목적, 체재기간, 직업 기타 사유를 감안하여 전체 취득가격 총액이 40만원 이내로서 여행자휴대품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반입을 허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물품의 여행자휴대품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에 계기된 품목당 기준에 의하되, 이는 제1항의 전체 취득가격 총액에 포함된다.

1. 주류 : 1명(1리터 이하)
2. 담배 : 1보루(엽권련 50개비, 기타담배 250그램)

3. 향수 : 2온스

4. 농산물(전체 취득가격 총액이 10만원 이내에 한함)

- 참기름 : 5kg
- 참깨 : 5kg
- 꿀 : 5kg
- 고사리, 더덕 : 5kg
- 잣 : 1kg
- 기타 : 5kg(품목당)

5. 한약재(전체 취득가격 총액이 10만원 이내에 한함)

- 인삼 : 300g
- 녹용 : 150g
- 기타 : 3kg(품목당)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은 북한산이어야 한다. 다만, 남북한왕래자가 제3국에서 북한을 거쳐 입경하는 때에는 제3국에서 구입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은 외국으로부터 직접 입국하는 여행자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 허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 8 조(반출입 규제물품) 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고시한 별첨 반출·반입 금지물품(별표 1)은 반출·반입을 불허한다.

② 다음 각호의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출·반입을 허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출·반입이

허용된다고 고시한 반출·반입 제한물품(별표 2)

2. 외국환관리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여 반출하는 지급 수단 등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제대상물품중 관계법규에 그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 구체적인 규제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제9조(반출입 규제대상물품 등의 처리) ① 세관공무원은 제7조 및 제11조에 규정한 휴대품 인정범위를 초과한 물품과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반출·반입이 규제되어 반출·반입이 허용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휴대품 보관증(별지 제2호 서식)을 왕래자에게 교부하고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된 물품은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귀환시 반송 또는 반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송 또는 반환되지 않는 물품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장 과 세

제10조(반출입 휴대품에 대한 과세) ①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휴대품 인정 범위 이내의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 제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7조 및 제11조에서 규정한 휴대품 인정범위를 초과한 물품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반입이 규제된 물품으로서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반출·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 및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를 준

용한다.

제5장 승무원의 휴대품 인정범위 등

제11조(승무원휴대품 인정범위) ① 세관장은 남북한왕래 수송장비의 승무원이 남·북한을 왕래할 때 휴대하여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하여 당해 승무원의 항행 또는 운행일수, 체제기간, 기타 사유를 감안하여 전체 취득가격 총액이 5만원 이내로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반입을 허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특정물품에 대하여는 담배 1보루에 한하여 반입을 허용하며, 항공기 승무원을 제외한 기타 승무원에게는 월 1회에 한하여 주류 1병(1리터이하)의 반입을 허용하되, 이는 제1항의 전체 취득가격 총액에 포함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휴대품은 북한산이어야 한다.

제12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와 여행자휴대품검사에관한시행규칙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1]

반출·반입 금지물품

가. 반입을 불허하는 물품

- 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간행물·영화·음반·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2)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모조품
- 3) 총포·도검 및 화약류 등

5. 남북한왕래자취대품통관에관한고시

-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
- 5) 기타 출입심사공무원이 위협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

나. 반출을 불허하는 물품

- 1) 반입을 불허하는 물품
- 2) 군사상 기밀 및 남한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 3)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
- 4) 문화재관리법에 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

[별표 2]

반출·반입 제한물품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반입이 허용되는 물품

- 1) 식품류(식품위생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물품)
- 2) 검역대상물품
- 3)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 의한 수출규제품목
- 4)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부칙 및 별지 생략〉

6.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제정	1990.	9.	25	통일부고시	제90-2호
개정	1991.	5.	6	통일부고시	제91-2호
	1994.	12.	1	통일부고시	제94-4호
	1995.	1.	3	통일부고시	제95-1호
	1996.	3.	5	통일부고시	제96-1호
	1997.	4.	1	통일부고시	제97-1호
	1998.	5.	12	통일부고시	제98-1호
	1998.	6.	19	통일부고시	제98-2호
	1999.	8.	16	통일부고시	제99-2호
	2000.	9.	28	통일부고시	제2000-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을 공고하고 남북한 교역물품의 반출·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한교역대상물품)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은 관세법 제7조 별표 관세율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품목으로 하며, 동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 통합분류목록표에 의한다.

제3조(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 ① 남북한교역대상물품중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을 요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수입에 허가·신고·확인·증명 등의 제한이 있는 물품
2. 반입물품으로서 도서, 음반, 미술품, 도예·공예작품,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이미 사용한 것과 통용되지 아니하는 것), 사진, 필름
(노광한 사진필름 및 영화·비디오물을 포함한다), 엽서·연하장

3. 반입물품으로서 별표 1에 계기한 품목

② 물품을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을 요하는 거래형태와 대금결제방
법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임대 또는 무상으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2. 외환거래법 제4장 지급과 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지급과 거래

제 4 조(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반출·반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본다.

1. 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및 지급과 거래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물품을 반출하거나 그 사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사업승인의 범위내에서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한 물품. 다만,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하는 원·부자재 및 그 위탁가공으로 생산하여 반입하는 물품. 다만,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1조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제 5 조(반출·반입승인신청서등) 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북한물품반입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대북한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3. 반출입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4. 반출입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 제 6 조(반출·반입 승인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에 의하여 이를 개별적으로 승인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별표 1에 신설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선적된 것으로 확인된 양에 한하여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반입 승인을 요하는품목

연번	품 목 번 호 HSK CODE	품 목
1	0102-10-1000	소(종우/젓소)
2	0102-10-2000	소(종우/육우)
3	0102-10-9000	소(종우/기타)
4	0201-10-0000	쇠고기(신선·냉장/도체·이분도체)
5	0201-20-0000	쇠고기(신선·냉장/뼈채 절단)
6	0201-30-0000	쇠고기(신선·냉장/뼈없는 것)
7	0202-10-0000	쇠고기(냉동/도체·이분도체)
8	0202-20-0000	쇠고기(냉동/뼈채 절단)
9	0202-30-0000	쇠고기(냉동/뼈없는 것)
10	0203-21-0000	돼지고기(냉동/도체·이분도체)
11	0203-22-0000	돼지고기(냉동/넓적다리·어깨살/뼈채 절단)
12	0203-29-0000	돼지고기(냉동/기타)
13	0207-12-0000	닭고기(미절단/냉동)
14	0207-14-1010	닭고기(다리/냉동)
15	0207-14-1020	닭고기(가슴/냉동)
16	0207-14-1030	닭고기(날개/냉동)
17	0207-14-1090	닭고기(기타/냉동)
18	0207-33-0000	오리고기(냉동/미절단)
19	0207-36-1000	오리고기(냉동/절단육)
20	0301-99-9070	미꾸라지(활어)
21	0303-79-9093	홍어(냉동)
22	0306-14-3000	게(냉동, 꽃게에 한함.)
23	0306-23-3000	새우와 보리새우(염장·염수장)
24	0306-24-1010	게(산 것, 신선 또는 냉장, 꽃게에 한함.)
25	0307-29-1000	가리비(냉동)

연번	품 목 번 호 HSK CODE	품 목
26	0307-49-1020	오징어(냉동)
27	0307-59-1020	낙지(냉동)
28	0402-10-1010	탈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29	0402-10-1090	분유(탈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 지방분 1.5% 이하)
30	0402-10-9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31	0402-21-1000	전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32	0402-21-9000	분유(전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 지방분 1.5% 초과)
33	0402-29-0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34	0402-91-1000	무당연유
35	0402-91-9000	연유(무당연유 이외)
36	0402-99-1000	가당연유
37	0402-99-9000	연유(가당연유 이외)
38	0403-90-1000	버터밀크
39	0404-10-1010	유장분말
40	0404-10-1090	유장(유장분말 이외)
41	0405-10-0000	버터(밀크에서 얻어진 것)
42	0405-90-0000	밀크에서 얻어진 기타의 지와유(버터이외)
43	0409-00-0000	천연꿀
44	0410-00-3000	로얄제리
45	0701-10-0000	감자(종자용)
46	0701-90-0000	감자(종자용 이외)
47	0703-10-1000	양파(신선·냉장)
48	0703-20-1000	마늘/탈피한 것(신선·냉장)
49	0703-20-9000	마늘/기타(신선·냉장)
50	0709-60-0000	고추류(신선·냉장)

6.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연번	품 목 번 호 HSK CODE	품 목
51	0710-80-2000	마늘(냉동)
52	0711-90-1000	마늘(일시저장)
53	0711-90-5091	기타채소(일시저장/고추류의 것)
54	0712-20-0000	양파(건조)
55	0712-90-1000	마늘(건조)
56	0713-31-1000	녹두(건조/종자용)
57	0713-31-9000	녹두(건조/종자용 이외)
58	0713-32-1000	팥(건조/종자용)
59	0713-32-9000	팥(건조/종자용 이외)
60	0714-20-1000	고구마(신선)
61	0714-20-2000	고구마(건조)
62	0714-20-3000	고구마(냉장)
63	0714-20-9000	고구마(신선·건조 고구마 이외)
64	0714-90-9090	서류(기타)
65	0802-31-0000	호두(탈각하지 아니한 것)
66	0802-32-0000	호두(탈각한 것)
67	0802-40-1000	밤(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68	0802-40-2000	밤(탈각한 것/신선·건조)
69	0802-90-1010	잣(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70	0802-90-1020	잣(탈각한 것/신선·건조)
71	0805-20-1000	감귤(신선·건조)
72	0805-20-9000	맨더린류(감귤 이외/신선·건조)
73	0805-90-0000	감귤류(오렌지·맨더린류·레몬·그레이프 푸르트 이외/신선·건조)
74	0810-90-3000	대추(신선)
75	0813-40-2000	대추(건조)
76	0902-10-0000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3kg이하 포장)

연번	품 목 번 호 HSK CODE	품 목
77	0902-20-0000	녹차(기타/발효하지 아니한 것)
78	0904-20-1000	고추(건조/분쇄하지 아니한 것)
79	0904-20-2000	고추(건조/분쇄한 것)
80	0910-10-0000	생강
81	1003-00-1000	맥주맥
82	1003-00-9010	겉보리
83	1003-00-9020	쌀보리
84	1003-00-9090	보리(맥주맥·겉보리·쌀보리 이외)
85	1005-10-0000	옥수수(종자용)
86	1005-90-1000	옥수수(사료용)
87	1005-90-2000	옥수수(팝콘용)
88	1005-90-9000	옥수수(종자용·사료용·팝콘용 이외)
89	1006-10-0000	벼
90	1006-20-1000	메현미
91	1006-20-2000	찰현미
92	1006-30-1000	맷쌀
93	1006-30-2000	참쌀
94	1006-40-0000	쇄미
95	1007-00-1000	수수(종자용)
96	1008-10-0000	메밀
97	1008-90-0000	곡물류(메밀·조·카나리시드 등 이외)
98	1102-30-0000	쌀가루
99	1102-90-1000	보리가루
100	1102-90-9000	곡분(쌀·호밀·옥수수·밀·메슬린·보리가루 이외)
101	1103-11-0000	밀(분쇄물 및 조분)
102	1103-12-0000	귀리(분쇄물 및 조분)
103	1103-13-0000	옥수수(분쇄물 및 조분)

6.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연번	품 목 번 호 HSK CODE	품 목
104	1103-14-0000	쌀(분쇄물 및 조분)
105	1103-19-1000	보리(분쇄물 및 조분)
106	1103-19-9000	곡물(기타/분쇄물 및 조분)
107	1103-21-0000	밀(펠리트)
108	1103-29-1000	쌀(펠리트)
109	1103-29-2000	보리(펠리트)
110	1103-29-9000	곡물(기타/펠리트)
111	1104-11-0000	보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12	1104-12-0000	귀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13	1104-19-1000	쌀(압착 또는 플레이크)
114	1104-19-9000	곡물(기타/압착·플레이크)
115	1104-21-0000	보리(압착·플레이크 이외)
116	1104-22-0000	귀리(압착·플레이크 이외)
117	1104-23-0000	옥수수(압착·플레이크 이외)
118	1104-29-1000	울무(압착·플레이크 이외)
119	1104-29-9000	곡물(압착·플레이크 이외)
120	1105-10-0000	감자(분, 조분과 분말)
121	1105-20-0000	감자(압착·플레이크 및 펠리트)
122	1107-10-0000	맥아(볶지 아니한 것)
123	1107-20-1000	맥아(볶은 것/훈연한 것)
124	1108-11-0000	밀 전분
125	1108-12-0000	옥수수 전분
126	1108-13-0000	감자 전분
127	1108-14-0000	매니옥 전분
128	1108-19-1000	고구마 전분
129	1108-19-9000	전분(밀·옥수수·감자·매니옥·고구마 이외)
130	1108-20-0000	이눌린

연번	품 목 번 호 HSK CODE	품 목
131	1201-00-1000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 용)
132	1201-00-9000	대두(기타)
133	1202-10-0000	낙화생(미탈각)
134	1202-20-0000	낙화생(탈각)
135	1207-40-0000	참깨
136	1211-20-1100	수삼
137	1211-20-1210	백삼(본삼)
138	1211-20-1220	백삼(미삼)
139	1211-20-1240	백삼(잡삼)
140	1211-20-1310	홍삼(본삼)
141	1211-20-1320	홍삼(미삼)
142	1211-20-1330	홍삼(잡삼)
143	1211-20-2210	홍삼분
144	1211-20-2220	홍삼 타브렛·캡슐
145	1211-20-2290	홍삼분말(홍삼분·타브렛·캡슐 이외)
146	1211-20-9100	인삼잎 및 줄기
147	1211-20-9200	인삼종자
148	1211-20-9900	인삼(인삼근·분말·잎·줄기·종자 이외)
149	1213-00-0000	곡물의 짚과 껍질(벼짚에 한함)
150	1214-90-1000	사료용 근채류
151	1214-90-9090	기타 사료용 식품(알팔파 베일 이외)
152	1302-19-1210	홍삼정
153	1302-19-1220	홍삼정분
154	1302-19-1290	홍삼엑스(홍삼정·홍삼정분 이외)
155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156	1702-11-1000	유당
157	1702-19-1000	기타유당
158	1702-90-1000	인조꿀

6.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연번	품 목 번 호 HSK CODE	품 목
159	1806-90-2290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기타 혼합물 및 가루반죽(보리가루의 것은 제외)
160	1806-90-2999	기타 조제식품(오트밀의 것 및 보리가루의 것은 제외)
161	1901-20-1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쌀가루의 것)
162	1901-20-2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보리의 것)
163	1901-20-9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쌀가루·보리가루의 것 이외)
164	1901-90-9091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의 것)
165	1901-90-9092	기타 조제식료품(보리가루의 것)
166	1901-90-9099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보리가루의 것 이외)
167	1902-19-2000	당면
168	2001-90-9060	마늘(식초 또는 초산으로 제조한 것)
169	2008-11-9000	낙화생조제품(피넛버터 이외)
170	2009-30-9000	감귤류주스(단일 감귤류주스/레몬·라임 이외)
171	2103-90-9040	매주
172	2106-90-3021	홍삼차
173	2106-90-3029	홍삼조제품(홍삼차 이외)
174	2106-90-9091	로얄제리, 벌꿀 조제품의 것
175	3301-90-4520	추출한 올레오레진(홍삼의 것)
176	3505-10-3000	배소전분
177	3505-10-4000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
178	3505-10-5000	에테르화 및 에스테르화 전분
179	3505-10-9000	기타 변성전분(기타)
180	3505-20-1000	전분 글루
181	3505-20-2000	덱스트린 글루
182	3505-20-9000	기타 글루
183	5004-00-0000	견사
184	9613-10-0000	포켓용라이터(가스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
185	9613-20-0000	포켓용라이터(가스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

7.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제정 1994. 6. 20 통일부고시 제94-1호

개정 1998. 5. 12 통일부고시 제98-1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간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수송장비 운행승인(이하 “운행승인”이라 한다)의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와 그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 1 조(운행승인의 신청)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행계획서(운행경위를 포함한다)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수송장비의 제원 내역서(사용할 수송장비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보할 수송장비의 제원과 확보방법 및 기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부
3.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서류(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4. 영 제43조제5호의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각 1부

제 2 조(대리승인신청) 대리인이 운행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제1조의 운행승인신청서류에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변경승인신청) 운행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7.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서식에 의한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류중 변경사항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유효기간 만료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추가자료요구) 통일부장관은 운행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1조의 운행승인신청서류외에 운행승인에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제정 1994. 2. 5 관세청고시 제94-861호

개정 1996. 6. 19 관세청고시 제96-4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거 남북 교역물품 통관에 따른 처리지침을 정하여 남북물자 교류시 통관업무의 원활과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입물품”이라함은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운송(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되어 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2. “반출물품”이라함은 남한에서 직접 북한으로 운송(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되어 반출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물품에 한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입 승인을 받은 물품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반출입물품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대외무역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 승인면제 요건에 부합되는 물품.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1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및 별표 3-2 제1호 가목, 나목, 다목에 규정된 휴대품 및 이사물

품은 제외한다.

제2장 남북교역물품의 통관

제4조(물품의 장치) ①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관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나 통관장 등 지정된 장치 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

②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은 당해물품의 제조공장 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장치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장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반입절차) ① 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예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수입신고서양식 사용)를 하고 그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수입통관사무처리예관한고시 제2-3-1조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제6조(관세)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내국세 등) ① 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교통세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제8조(물품가격의 결정)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세 등을 부과, 징수하는 경우 관세표준에 사용되는 물품의 가격은 관세평가시행세칙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② 구상무역방식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

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른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가격을 제6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금액으로 표시된 당해 반입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결정할 수 있다.

제9조(반출 및 환급절차) ①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수출신고서 양식사용)를 하고 그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중 전략물자수출입공고상의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략물자수출입통 관요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심사하고 물품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을 환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입 승인을 받은 대북한 위탁 가공 반출물품(반출입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에서 제조·가공한 후 재반입할 것을 전제로 반출한 물품 및 제3국으로 수출할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관세 등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북한 위탁 가공 물품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승인 또는 수출승인을 받아 북한에서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구비조건 등의 확인) 남북교역물품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령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승인, 추천 또는 기타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8.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대하여는 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남북교역물품의 표시) 남북교역물품을 반출입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고무인을 반출입신고서 상당 우측여백에 날인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수출·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준용)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승인 면제대상 반출입 물품의 통관은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의 일반규정을 따른다.

제3장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제13조(원산지 확인) 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서 당해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반입신고서에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반입물품의 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의 발행기관 및 관계기관에 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당해 증명서가 적법한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2. 당해 증명서에 기재된 세부사항이 사실인지 여부

제14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면제) 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1.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10만원 이하인 물품
2. 우편물(관세법 제15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개인에게 무상송부된 탁송품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육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휴대품이나 별송품
4. 재반출 조건부 일시반입물품
5.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과세가격 기준은 동일한 송화인과 수화인간에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개의 물품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과세가격을 합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적용한다.

제15조(원산지 확인에 있어 직접운송원칙) ① 반입물품의 원산지는 그 물품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남한으로 운송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당해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이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이 이루어지고 이들 이외의 다른행위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이를 남한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1.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가 이루어진 물품
2. 박람회, 전시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당해물품의 전시목적에 사용한 후 남한으로 반출한 물품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1. 선하증권 사본(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
2. 경유국의 세관 또는 권한있는 관공서 등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세관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수출 대상국 및 선하 증권상의 운송경로와 실제 운송경로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입물품이 북한에서 적출되었는지 여부를 반입물품 운송선박의 선장 확인 항해일지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원산지 증명서) ① 원산지증명서는 발송인, 수화인, 발행번호, 발행일자, 당해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수송수단, 산지, 수출대상국 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하며, 국제협약 또는 국제관례에 맞게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영어로 표기된 것이어야 한다.

③ 원산지증명서는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조선무역은행” 등 북한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제17조(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 세관장은 북한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여행자 휴대품 등 수입승인면제물품을 포함한다.)중 원산지표시가 부착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시 원산지 표시가 부착된 상태로 통관을 허용한다. 다만, 포장물품 등에 부착 또는 인쇄된 선전문구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제거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1. 관세법 제146조(수출입의 금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
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
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
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용
5. 기타 국민의 안보의식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내용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물품 및 그 부장 물품은 당해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방법, 원산지표시의 확인 등에 대하여는 원산지관리 세칙을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제18조(조사의뢰) 세관장은 반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세범칙 등의 조사를 의뢰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허위표시한 때
2.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작성 또는 구비하여 제출한 때

제19조(반출입 통계) ①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통계는 무역통계에 관한 기본지침에 불구하고 무역통계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②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통계작성은 별도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보 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반송, 관세범칙 등의 조사의뢰
2. 기타 반출입물품 통관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사항

제2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 및 관세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생략〉

9.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정 1994. 12. 1 통일부고시 제94-2호

개정 1998. 5. 12 통일부고시 제98-1호

개정 1999. 5. 28 통일부고시 제99-1호

제1 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중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및 영에 의하여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남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된다.

제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협력사업”중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 다음 각목의 1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 수행결과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비율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받기로 하거나, 투자원본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받기로 하는 행위.
 - 가. 남과 북의 법률에 의해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투자지역내의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
 - 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
 - 다. 토지, 건물 및 이의 사용·수익권

- 라. 공업소유권, 저작권, 기술공정 등 지적재산권 및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 마. 광업권, 어업권, 전기·열·수자원 기타 에너지의 개발 또는 사용권 등 자연자원을 조사·개발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바. 기타 사업 당사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합의하는 모든 형태의 재산 및 재산권
2. 상대방 지역에 제1호 각목의 1을 단독으로 또는 상대방 지역 주민 이외의 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행위
3. 주된 협력사업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1중 통일부장관이 사업의 규모,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
- 가. 상대방의 주민을 고용하는 행위
 - 나.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행위
 - 다.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거나 조사·연구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행위
4. 기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협력사업
- 제 4 조(사업실적 인정범위) 영 제30조제2호의 “사업실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제조업인 경우 해당 협력사업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주된 생산품목에 대한 생산실적 또는 수출입실적, 생산에 직접 관련되는 기계·설비의 생산실적 또는 수출입실적
 - 2. 농림수산업, 광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기타 서비스업은 해당 협력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영업실적(사업 수주실적 포함)

9.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3. 기타 특수업종인 경우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인정하는 사업실적

제 5 조(협력사업자 승인신청시 구비서류) ① 영 제31조제1항의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협력사업자승인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협력사업의 개요설명서(사업목적, 추진경위, 사업수행방식, 사업상대방, 진출지역, 생산품목, 생산능력, 예상투자규모·투자비율, 자금조달 방법, 제품판매 계획, 기타 사업의 주요내용 포함) 1부
3. 의향서 사본 1부
4.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승인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기간 중 가장 최근에 작성된 대차대조표 1부(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타 자본금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의 성질상 특정구비서류가 불필요하거나,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매 사업별로 특정 구비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협력사업자 승인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7 조(수시방북 승인) ① 통일부장관은 경제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 제16조제1항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수시방북을 승인하는 북한방문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협력사업자는 증명서 발급대상자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의 서류
2. 수시방북이 필요한 사유서 1부
3. 향후 1년 6월간의 방북예정서 1부

③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경우에도 방북자는 영 제17조에 따라 매 귀환 후 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매 방북시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북 7일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사본) 1부 또는 초청장(원본) 1부

④ 통일부장관은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자가 방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수시방북을 허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인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 8 조(협력사업 승인신청 구비서류) 영 제34조제1항제5호의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력사업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산업입지조건 등에 관한 현지 타당성 조사결과 1부(수송, 전력, 통신, 항만, 용수, 노동력 등을 포함)
3. 제3조제2호의 방법에 의한 대북투자의 경우 북한 당국에 제출할 “외국인기업 창설 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본 1부

제 9 조(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류의 기재방법 등) ① 영 제34조제2항에 의한 “기재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9.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예관한규정

1.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투자계획(현물출자가 수반되는 경우 현물출자에 필요한 반출입 물자의 상세 목록 포함)
 - 나.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
 - 다. 생산 및 판매계획
 - 라. 조직 및 인력계획
 - 마. 추진일정 계획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에는 사업상대자의 연혁·조직·사업실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북한측 당사자가 북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법인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는 사업상대자와 최종 협의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 단체, 기타 기구 (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존속기간 및 적용 법규
 - 나. 협력사업 당사자의 성명, 주소
 - 다. 총투자액, 출자비율, 등록자본금 및 증감가부, 출자방식, 출자 자산평가방법, 출자 기간, 출자금의 양도조건
 - 라. 임원 및 이사회 구성, 의결정족수, 이사회 소집절차 등 회사의 조직,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마. 회사 등의 업종, 생산규모, 생산제품의 판매·처리방법, 자체조달 방법
 - 바. 당사자의 임무
 - 사. 근로자의 고용, 해고, 임금에 관한 사항

아. 결산 및 이윤의 분배·적립, 송금보장에 관한 사항

자. 세금, 회계에 관한 사항

차.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카. 효력발생 조건

타. 회사 등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파.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및 이로 인한 의무 불이행의 해결 방법

4. 북한당국의 확인서는 북한법령에 의거 해당 협력사업 승인권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협의서 내용의 이행보장

나. 인원의 신변보장 및 협력사업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의 성질상 특정기재사항이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신청서류별로 특정사항의 기재를 면제하거나 추가 기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사업 승인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사업 승인 이후의 투자절차) 협력사업으로 승인받은 행위가 외국환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 협력사업 승인 이후 투자절차에 관하여는 외국환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필요한 범위안에서 준용하되, 법 제26조제4항 및 영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특례”를 고시하는 때에는 이에 의한다.

제12조(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영 제38조제1항제6호의 “기타 통일부장관

9.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사 등의 규약(채택일로부터 20일이내)
2. 영업허가증, 출자증명서, 토지이용증 등 제증명서의 취득사항(발행일로부터 20일이내)
3. 회사 등의 대표자의 변경(변경일로부터 20일이내)
4. 기타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동시처리)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신청과 그 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총 투자액이 미화 300만불 이하일 경우
2.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경우
3. 남북한 당국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일 경우

〈부칙 및 별표 생략〉

10.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제정 1994. 12. 1 통일원고시 제94-3호

개정 1998. 5. 12 통일부고시 제98-1호

1998. 12. 31 통일부고시 제98-4호

제1 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해 국내기업(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분야의 법인 및 개인기업을 말한다) 및 경제단체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북한지역에 사무소(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할 승인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사무소의 기능) 사무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단, 남북한 당국이 사무소의 기능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한 때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

1. 통신연락 등 업무연락
2. 시장조사, 연구활동, 경제기술 자료의 소개 및 자문활동 등의 비영업적 활동
3.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가 위임한 범위내의 북한측 거래당사자와의 계약체결, 대금의 수취와 지불, 물자의 인도와 인수 등의 위임대리 업무

제3 조(사무소의 설치 승인) ① 북한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무소 설치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설립인가서 사본
2. 사무소의 업무활동 계획서(주재원 및 현지인원 고용계획 포함)
3. 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활동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와 경비조달계획서, 사무기기 등 사무소 운용과 주재원의 일상생활을 위한 필요 물품 반출명세서
4. 사무소 설치에 관한 북한측은 관계자와의 협의 경위 및 결과
5.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서(금융기관에 한함)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 4 조(승인요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설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이 있을 것
2.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3.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 5 조(승인 처리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제4조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자의 사무소 설치를 승인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설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사무소설치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 <삭 제>

제 7 조(사무소의 폐지) ① 이 지침에 의하여 사무소의 설치 승인을 받은 자가 사무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무소 폐지신고서에 폐지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삭 제>

제 9 조(사무소 설치 보고 등) ① 사무소 설치 승인을 받은 자는 사무소 설치를 완료한 후 20일 이내에 현지 법규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설치행위 완료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의 설치를 완료한 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무소의 반기별 활동 상황을 반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5호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 등록증은 등록증 재발급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위임대리업무 처리내역
2. 주요인사 면담 및 내방내역
3. 북한기업에 대한 자문, 경제·기술자료 소개 등 활동내역
4. 주재원의 남한 또는 제3국 방문내용
5. 사무소 및 주재원의 등록증(매년마다 북한당국이 재발급하는 것에 한함)
6. 사무소의 명칭 또는 위치 등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의 변경내용(변경사유 증빙서류 사본 첨부)
7. 특이사항 및 기타 참고자료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승인의 취소 등) 통일부장관은 북한에 설치된 사무소가 설립 목적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

하거나, 주재원의 감축·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단, 사무소 설치 승인의 취소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주재원의 북한방문) ① 통일부장관은 사무소 설치 승인 이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소 파견 주재원이 수시로 방북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재원의 신청에 의하여 1년6월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수시방북을 승인하는 북한방문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주재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서류

2. 수시방북이 필요한 사유서 1부

3. 향후 1년6월간의 방북예정서 1부

③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경우에도 방북자는 영 제17조에 의거 매 귀환 후 증명서를 통일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매 방북시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1부

2.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사본) 또는 초청장(원본) 1부

④ 수시방북 승인을 받은 주재원은 승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방북 만료기간 30일 전에 기간연장이 필요한 사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수시방북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자가 방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수시방북을 허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인사항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외국환의 사용) 사무소의 개설, 유지활동 등에 필요한 외국환의 사용은 외국환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필요한 범위안에서 준용하되, 영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특례”를 고시하는 때에는 이에 따른다.

<부칙 및 별지 생략>

11.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제정 1995. 6. 28 재정경제부고시 제95-23호

제 1 절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관리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관리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외국환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거주자와 외국환관리규정 제12장제2절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한 현지법인(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의 북한지역에의 투자 및 북한지역사무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대북투자업종이 금융·보험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 4 조(투자의 방법) 거주자와 현지법인의 북한지역에의 투자(이하 “대북투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북한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증권 또는 출자지분 등을 취득하는 방법
2. 제1호의 법인에 대하여 투자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상환기간 1년 이상에 한함)을 대부하는 방법
3. 북한지역에 지점을 설치 또는 확정하기 위하여 그 지점에 자금을

지급하는 방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북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는 방법

제 5 조(적용규정) ① 제4조제1호, 제2호, 제4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4조제3호의 북한지점 및 북한지역 사무소(이하 “북한지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절 법인설립 등의 방법에 의한 투자

제 6 조(투자의 요건) 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다.

- 1. 투자자가 금융기관의 규제대상이 되는 불량거래처가 아닐 것
- 2. 투자자가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투자수행능력이 있을 것

②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다.

- 1. 시설투자의 금액, 부동산취득, 소요운전자금 등 자금운용계획과 소요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 2. 생산 및 매출계획이 시설규모와 시장수요 등에 비추어 적정할 것
- 3. 투자원금 및 과실의 회수가 가능하고 이익계획이 적정할 것

제 7 조(투자의 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현지법인의 경우에는 그 현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협력사업승인을 받은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현지법인의 대북투자의 경우, 신고를 받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최초 해외투자시 허가 등을 한 기관에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북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북투자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승인서 사본
2. 투자에 관한 최종합의서 사본
3.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부속명세서가 있는 경우 그 부속명세서)
4.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변경승인서 사본

제 8 조(의견요청) 제6조제2항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시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은행의 장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투자금의 송금 등) ① 대북투자신고를 한 자(이하 “대북투자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바에 따라 투자를 실행하기 위하여 북한에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북투자자가 현물로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내용에 따라 물자를 반출한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투자금 등의 회수) ① 대북투자자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당해 투자의 원금 또는 과실을 현금 또는 현물로 남한에 회수하여야 한

다. 다만, 과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대북투자자가 신고한 사업을 청산하거나 투자금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북투자자는 협력사업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당해 투자사업을 즉시 청산하여야 한다.

④ 대북투자자가 투자금액을 감액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투자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감액한 투자금 또는 잔여재산을 즉시 남한에 회수하여야 한다.

1. 사업기간의 종료
2. 협력사업 승인의 취소
3. 증권, 지분 및 사업 등의 양도
4. 제4조제4호의 경우 사업목적의 달성 등
5. 기타 사유로 인하여 투자사업을 청산하는 경우

제11조(대북투자자의 사후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 하여금 대북투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북투자사업 실적을 분석·검토하며 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게 하는 등 대북투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보고서의 제출 등) ① 대북투자자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일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권, 지분, 대부채권의 취득 및 변동보고서 : 취득 또는 변동후 1월이내
2.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후 5월이내
3. 대부원리금 회수보고서 : 즉시
4. 청산보고서 : 청산후 2월이내

②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대북투자의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대북 투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대북투자에 대한 필요조치의 시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대북투자자가 대북투자자와 관련하여 외국환관리규정 제17-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 지침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규정 제17-13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현지법인인 대북투자자가 대북투자자와 관련하여 외국환관리규정 제17-1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 지침에 중대한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현지법인의 해외투자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당해 현지법인의 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직접 당해 해외투자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대북투자사업의 분석결과 경영이 부실한 대북투자자에 대하여는 신규 대북투자의 승인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재정경제부장관을 경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절 북한지사

제14조(북한지사의 구분) 북한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북한의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설치하는 “북한지점”
2. 북한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북한사무소”

제15조(북한지사의 설치) 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은 북한지사 설치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다.

② 북한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승인을 받은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북한지점의 영업기금) ① 북한지점을 설치한 자가 협력사업승인을 받은 바에 따라 북한지점에 영업기금(당해 북한지점의 설치비·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포함하고 현지 금융차입에 의한 자금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북한지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 대신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북한지점의 영업기금은 당해 지점의 인정된 영업활동을 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7조(북한사무소의 설치비) ① 북한사무소의 설치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북한사무소의 설치비는 북한사무소의 설치 또는 확장에 따르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 등 북한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구입비 또는 임차료(장기임대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지불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동산집기류(자동차를 포함한다)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3. 영선비(사무소의 수리비 또는 원상복구비를 포함한다)
4. 전화, 텔렉스 등 통신관계 설치비

5. 기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본적 지출 비용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 지급을 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에 의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북한사무소의 설치계획서에 의하여 사전개산 지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치비 지급인증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의 정산결과 미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18조의 유지활동비로 전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용금액은 당해 사무소의 유지활동비 지급인증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제18조(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 ① 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북한사무소의 활동 및 유지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를 말한다)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는 기본경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한다.

③ 기본경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실제 소요되는 경비 전액을 지급하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1. 전기, 가스 및 수도료
2. 전신전화료
3. 동산임차료, 부동산 사용료 및 주택수당을 받지 않는 주재원의 주거용 주택임차료(기간단위로 지급하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제세공과금
5. 현지인력의 고용에 따른 보수
6. 기타 북한사무소의 운영에 정기적, 필수적으로 소요된다고 지정거

래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비

④ 기타경비는 제3항의 기본경비 이외의 경비로서 그 지급한도는 사무소당 월 미화 2만불 및 주재원 1인당 월 미화 1만불로 하며 경비용도에 관한 확인 및 사후관리를 요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의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기타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활동비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인증일부터 180일 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기타경비 지급을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9조(북한지점의 결산 순이익금의 처분 등) ① 북한지점을 설치한 자(독립채산제의 예외적용을 받는 북한지점은 제외한다)는 당해 거주자의 매 회계기간별로 북한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와 결산결과 발생할 순이익금의 처분내역을 그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순이익금의 처분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전기이월 결손에의 충당
2. 남한에 회수
3. 당해 북한지점의 영업기금으로의 운용

제20조(북한지사의 경비사용에 관한 유지관리의무) 북한지사는 동 지사의 영업기금, 설치비, 유지활동비 및 기타자금을 보유·사용함에 있어서 각 지사별로 독립장부를 비치하여 그 보유·사용·차입 및 대부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북한지사에 관한 사후관리 등) ① 북한지사의 설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지사설치를 완료한 후 20일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설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북한지사가 토지이용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일부터 20일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의 장에게 그 취득 또는 처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북한지사를 설치한 자는 당해 북한지사의 반기별 영업활동상황을 반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북한지사의 토지이용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취득 및 처분, 결산, 자금의 차입 및 대부, 주재원수 등에 대하여 각 지사별로 종합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북한지사의 폐지 등) ① 북한지사를 폐지하거나 그 명칭 또는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폐지 또는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북한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북한지사의 폐지를 재정경제부장관을 경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당해 북한지사 또는 이를 설치한 자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
2. 북한지점의 결산결과 3회계연도 계속하여 손손실이 발생하고 향후 이익발생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3. 기타 당해 북한지사의 현지활동상황 및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이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사의 폐지신고를 하거나 폐지지시를 받은 자는 당해 북한지사의 제자산처분대전을 지사를 폐지한 즉시(폐지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폐지지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 남한에 회수하고 당해 북한지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제자산처분명세서와 그 처분대전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매각증명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현지금융) ① 거주자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북한에 설치한 현지법인(이하 “북한 현지법인”이라 한다) 및 북한지점이 승인받은 협력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가 당해 현지금융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은행의 장의 인증, 외국환은행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북한 현지법인 또는 북한지점(이하 “북한 현지법인 등”이라 한다)이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 없이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가 승인받은 대북투자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북한 및 해외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
2. 북한 현지법인 등이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거주자. 다만, 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거주자와 계열관계에 있는 기업이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기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함에 있어 지급보증은행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현지금융이 승인받은 협력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시설투자를 위한 것일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함에 있어 지급보증은행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현지금융이 북한현지법인 등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전년도 매출 실적(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초년도 예상매출액)의 100분의 40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④ 북한 현지법인 등이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현지금융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아 차입한 자금은 그 허가 또는 인증받은 내용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그 사용 및 그 차입원리금의 정당한 상환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외국환은행의 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1.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은행의 장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현지금융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을 한 외국환은행의 장
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요하지 아니하는 현지금융의 경우에는 당해 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현지금융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은행의 장, 지급보증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⑥ 재정경제부장관의 현지금융 허가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의 현지금융 인증을 받은 자 및 북한 현지법인 등이 거주자의 보증없이 현지금융을 받은 경우 당해 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자(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자가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현지법인을 설치한 거주자)는 당

해 현지금융의 차입 및 상환분기보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금융의 사후관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다음 분기 첫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⑦ 현지금융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그 허가 또는 인증받은 바에 따라 원금 및 이자와 부대비용을 국내에서 북한 또는 해외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은행의 장의 인증, 지급보증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⑧ 지급보증은행의 장이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보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의 내용을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의 신고 : 즉시
2. 제12조제1항의 보고 : 1월이내
3.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사실 : 즉시
4. 제17조제1항의 인증 : 1월이내
5. 제18조제5항의 허가 : 1월이내
6. 제19조의 결산보고 : 1월이내
7.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보고 : 1월이내
8. 제22조제1항의 신고 : 즉시
9. 제22조제3항의 보고 : 1월이내
10.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인증, 제6항의 현지금융의 차입 및 상환분기보, 제7항의 인증 : 1월이내

제25조(권한의 위임) 재정경제부장관은 이지침 제13조, 제23조제4항의

11.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생략〉

12. 남북협력기금법

- 제정 1990. 8. 1 법률 제4240호
- 개정 1990. 12. 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 1993. 12. 31 법률 제4675호(국채법)
- 1996. 12. 12 법률 제5170호
(재정융자특별회계법)
- 1997. 12. 13 법률 제5454호(정부부처명칭
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1999. 5. 24 법률 제5982호(정부조직법)
- 1999. 12. 31 법률 제6075호(국채법)

제 1 조(목 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남북한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역” 및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은행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 3 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 4 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 5 조(장기차입)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6 조 삭제 <93.12.31>

제 7 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중 경제 및 재정·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사항
4.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8 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의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용자
4.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에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자금을 용자해 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차입금 및 공공기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개정 '93.12.31〉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출납담당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③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관한법률중 세입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담당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과 기금출납직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일시차입)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12. 남북협력기금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환수)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지출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의 매입
2.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및 명령)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부칙 생략〉

13.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 제정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37호
-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
(통일원과 그 소속기관직제)
-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
(문화체육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26호
(기획예산처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자원) 법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제3조(채권의 발행)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채권의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발행의 이유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소화계획

5. 발행조건

6. 기타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채권의 이자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 당시의 국·공채 및 보증사채 등의 금리수준을 고려한 시장실세금리를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③ 채권은 액면금액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 4 조(채권사무의 취급)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 등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 5 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6 조(기금운용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3. 자금사용계획

4. 추정대차대조표
5. 추정손익계산서
6.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기금의 지원 등의 절차)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의 지원, 융자,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이하 “지원 등”이라 한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 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금의 지원 등을 결정하되,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3. 법 제8조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지원 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로서 하여금 기금의 지원 등의 타당성·규모 및 조건 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 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지원 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 등의 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기금의 지원 등의 요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20

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시행시기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한국 수출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용자로서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전업무 등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비용, 환거래비용,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기타 부대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손실의 지원 및 채권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라. 기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지원·용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의 지원 또는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용자·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9 조(지원의 방법) ①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또는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 및 손실보조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그 요건·절차·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

정으로 정한다.

제10조(비지정통화)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제11조(회계기관의 임명통지) 통일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기금출납담당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금출납공무원(기금출납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임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채권발행자금, 회수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지원금, 융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금 상환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15조(결산보고서) ① 통일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6조(기금의 계리)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

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계리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한다.

제17조(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 기금의 지원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 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계획서 및 기금사용결과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기금의 환수) ① 법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기금출납명령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① 통일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 등의 조건·절차·방법·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생략>

14.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제정 1991. 3. 27 총리령 제384호
개정 1998. 6. 1 통일부령 제3호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의결사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1억원이상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지원
3.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
4.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자금지원·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보증 또는 손실보조의 약정
6.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7.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경미한 사항)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숙식비·교통비 등 기본적 경비의 지원

14.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1억원미만의 지원
3.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천만원미만의 자금지원·손실보전 또는 비지정 통화의 인수
4. 법 제8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예의 기금사용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천만원미만의 보증 또는 손실보조의 약정

<부칙 생략>

15.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정 1991. 4. 17 통일원고시 제91-1호
개정 1998. 5. 12 통일원고시 제98-1호
1998. 12. 31 통일부고시 제98-4호
1999. 10. 27 통일부고시 제1999-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위탁받은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이 행한다.

제2장 기금의 관리

제3조(기금운용상황보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4조(결산보고서의 제출) 기금수탁관리자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 영 제15조제2항 각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보고서안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수수료)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이하 “위탁수수료”

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6 조(여유자금의 운용 등)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방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안정성, 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기금의 업무

제7 조(업무의 종류) 법 및 영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북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하 “주민왕래지원자금”이라 한다)
2. 문화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문화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3. 학술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학술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4. 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체육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5.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한주민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조(이하 “손실보조”라 한다)
6. 경제분야 협력사업지원을 위한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이라 한다)

7.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용자(이하 “반출자금대출”이라 한다)
 8.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용자(이하 “반입자금대출”이라 한다)
 9.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을 위한 보증(이하 “채무보증”이라 한다)
 10.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용자 및 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의 보전 또는 경비의 지원(이하 “금융기관손실보전”이라 한다)
 1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하여 용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이하 “금융기관용자자금지원”이라 한다)
 12.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이 인수하기로한 미결제채권의 인수(이하 “미결제채권인수”라 한다)
 13. 금융기관에 대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 및 매각(이하 “북한 원화의 인수 및 매각”이라 한다)
 14. 기타 민족의 신뢰·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이하 “민족공동체회복지원”이라 한다)
- 제 8 조(채무의 조정)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 등을 받은 자의 기금에 대한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 원리금(연체이자 포함한다)의 상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금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가 감면된 경우에는 기금은 기금의 지원 등을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제4장 무 상 지 원

제1절 주민왕래지원자금

제9조(지원대상) 기금에서 주민왕래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남북한을 왕래하는 제10조에 해당하는 자 및 남북한간 주민왕래를 주선·지원하는 자로 한다.

제10조(지원조건)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남북한 왕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비에 의한 남북한간 왕래가 어려운 경우
2. 남북한간 왕래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개인별 부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왕래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4. 기타 남북한간 왕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지원의 우선순위)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제한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부모·친자 및 배우자(배우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를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2. 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을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3. 고향을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인 자가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제12조(지원한도)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에 대한 경비의 지원은 숙식비·교통비 등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의 범위이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따른다.

제13조(지원절차) ① 주민왕래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통일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자금을 집행한다.

제14조(지원통화) ① 남한에 오는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통화는 원화로 한다.

② 북한에 가는 남한주민에 대한 지원통화는 원화 또는 북한원화로 한다.

제15조(지원자금의 관리) 남북한간 주민왕래를 주선·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왕래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기관에 신규로 예

금계좌를 개설하여 동 자금을 관리하고 출납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 주민왕래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3조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자금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후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인 경우에는 기금사용계획서의 제출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의 제출은 방문증명서의 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주민왕래지원자금을 받은 후 계획의 취소, 축소, 중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할 때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간 왕래의 성격, 긴요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0조의 지원조건, 제11조의 지원의 우선순위, 제12조의 지원한도, 제13조의 지원절차, 제16조의 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를 달리할 수 있다.

제 2 절 문 화 · 학 술 · 체 육 협 력 지 원 자 금

제18조(지원대상) 기금에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분야의 행사 및 활동을 추진하는 자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19조(지원한도)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금액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그 예상 수익금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20조(지원절차) ①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제21조(지원자금의 관리)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기관에 신규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동자금을 관리하고 출납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삭 제>

제23조(지원자금 사용결과 보고) ①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사용한 자는 관련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받은 후 관련사업의 취소, 축소, 중단 또는 관련 사업의 수익금을 과소 예상한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기금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익월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24조(지원통화) ① 남한에서 시행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에 대

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원화로 한다.

② 북한 또는 외국에서 시행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에 대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원화 또는 북한 원화로 한다.

제25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성격,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8조의 지원대상, 제19조의 지원한도, 제20조의 지원절차, 제21조의 지원자금의 관리, 제23조의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를 달리할 수 있다.

제5장 손실보조

제26조(손실보조의 대상) 기금으로부터 손실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는 남한주민으로 한다.

1. 교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가. 반출한 물품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나. 대금지급 물품의 반입불능 또는 반입지연

다. 기타 교역으로 인하여 교역당사자의 귀책사유없이 발생한 손실 중 손실보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 사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른 투자원본 또는 지분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나. 시설 및 운용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원금과 약정이자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다.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물품 기타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물

품 및 용역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라. 배당금인 경우에는 실현된 배당금의 송금불능 또는 송금지연

제27조(보조할 손실의 범위) 기금으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손실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물품 및 용역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인수하거나 제공받은 후 발생한 손실
2. 현금 및 자금이체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된 후 발생한 손실

제28조(배당금 손실의 인정) ① 제26조제2호의 라목의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배당금의 합계액은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가액의 범위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각 사업연도별 배당금액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범위 이내로 한다.

제29조(손실보조 약정절차) ①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역 또는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손실보조약정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정하여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다.

제30조(업무취급 수수료)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

실보조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손실보조약정 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이하 “업무취급수수료”라 한다)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날을 기한으로하여 수납한 후 손실보조약정증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손실보조약정의 효력) ① 손실보조약정의 효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취급수수료가 납부된 날부터 발생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손실보조약정을 신청한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 약정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반출 및 송금이행통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할 자(이하 “피약정자”라 한다)는 물품의 반출, 용역의 제공 또는 현금을 송금한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삭 제>

제34조(업무취급수수료의 환급) ①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 후 피약정자에게 귀책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물품의 반출·반입, 용역의 제공, 송금의 개시 등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기금은 업무취급수수료를 환급할 수 있다.

② 피약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업무취급수수료환급신청서에 환급을 청구하게 된 이유와 경위를 기재한 서류와 당해 손실보조약정증서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업무취급수수료환급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취급수수료를 피약정자에게 환급한다.

제35조 <삭 제>

제36조(손실보조금 지급) 기금이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조금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100분의 90이내에서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약정으로 정한 비율 이내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 교역·경제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그 손실의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면 책) ① 기금은 피약정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조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기금은 손실보조약정의 효력발생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조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8조(손실보조약정 해지 등) 기금은 피약정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과 이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손실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손실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및 손실보조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39조(손실보조금의 반환)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피약정자에게 통지한다.

② 피약정자는 제1항의 손실보조금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 영업일 이내에 반환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피약정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당해 금액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요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요율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0조(대위권) ① 기금이 손실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피약정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② 피약정자는 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41조(회수금 통지) 피약정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받기전 또는 지급을 받은 후에 회수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회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회수계산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의 경위를 기재한 서류
2.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의 사본

제42조(회수금의 납부) ① 피약정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금(연체 이자를 제외한다)이 있을 때마다 동 금액에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금 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산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피약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당해 금액에 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채권행사에 관한 보고) 피약정자는 손실보조약정증명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은 때에는 손실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매 6월마다 기금수탁관리자에게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채권행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제1절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제44조(대출대상) 기금으로부터 경제협력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북한 주민과 기술·자본·인력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으로 한다.

제45조(대출비율) 기금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46조(대출조건) 대출조건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47조 <삭 제>

제48조(대출절차) ①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자금대출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의 타당성, 규모, 조건 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자금을 집행한다.

제49조(사업보고) ①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한 기간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1. 주식취득보고서
2. 대부에 따른 채권취득보고서
3.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4. 배당금 및 원리금회수보고서(증명서를 첨부한다)
5. 청산예정보고서
6.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7. 기타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보고서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지원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의 지원실적과 경영실적을 종합분석한 연보를 익년도 6월말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대출금 상환) ①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한 대출조건에 불구하고 경제협력사업대출자금을 조기회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 조기상환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2. 물품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기일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환일로부터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51조 <삭 제>

제52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달리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의 대출의 대상, 제45조의 대출비율, 제46조의 대출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2절 반출·반입자금 대출 등

제53조(반출·반입자금 대출) ① 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반입자금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자금 대출에 관하여는 제45조, 제46조, 제48조 및 제50조 내지 제52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협력사업”은 “반출” 또는 “반입”으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은 “반출자금대출” 또는 “반입자금대출”로 본다.

③ <삭 제>

제54조(결과보고)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에게 대출자금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관련사업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출자금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대출금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익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7장 채무보증

제55조(보증대상) 기금이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반출·반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2.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제56조(보증조건 및 방법) 보증조건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의뢰인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남한주민으로 한다.

2. 수혜자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3. 보증형식

증서에 의한 보증형식에 의한다.

4.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가. 의뢰인과 수혜자간에 체결된 계약상의 보증한도 범위내로 한다.

나. 보증기간은 당해 거래의 용자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5. 보증 및 대지급 요율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요율로 한다.

6. 담보

가. 남한내의 담보를 취득하거나 당해 거래와 관련된 주식, 채권, 신용장, 지급보증서, 어음 등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담보이외에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제57조(보증절차) ①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2호 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증의 타당성, 조건 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집행한다.

제 8 장 금융기관 지원업무

제 1 절 금융기관손실보전

제58조(손실보전대상) 기금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손실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한 왕래, 교역, 경제협력사업 등과 관련하여 환전업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가.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 가격차에 의한 손실
나.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에 따른 자금의 이자 손실
다.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취급시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취급수수료
라. 북한원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마. 기타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
2.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융자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3. 대금결제업무 취급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및 기타 경비

제59조(손실보전 신청 등) ① 금융기관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하여 작성된 손실계산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금융기관손실보전신청서 1부를 익월 5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전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손실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 제60조(보전이자율 등)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계산 기초가 되는 보전이자율·취급수수료율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2절 금융기관용자자금 지원 및 미결제채권인수

제61조(지원대상) 기금이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미결제채권의 인수대상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과 관련된 용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용자 취급액 범위내에서 자금지원
2. 남북한간에 설치된 대금결제구좌의 미결제채권인수

제62조(지원절차) ① 금융기관이 제6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금융기관용자자금지원신청서 1부를,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결제채권의 인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미결제채권인수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지원방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다.

제63조(지원조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조건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

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3절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

제64조(북한원화의 인수신청) 금융기관은 기금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기금에 매각하거나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매수할 수 있다.

제65조(인수조건 등) 기금이 북한의 원화를 인수하거나 매각할 때의 조건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6조(북한원화의 환전) 재정경제부장관은 북한원화를 원화로 환전해주는 시기,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9장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

제67조(지원대상) 기금에서 제7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8조제5호 및 영 제8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8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기금이 민족공동체회복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내용에 따라 융자, 손실보조, 채무보증, 금융기관 지원업무, 보조금의 지급 기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절차는 각 지원내용에 부합되는 절차를 준용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9조(지원금액·지원조건)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자

할 경우 그 지원금액·지원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장 보 칙

제70조(외국환업무의 취급) 기금은 법, 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제71조(기금의 출연) ① 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외의 자(기관·단체·다른기금·외국인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가 기금에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납입의뢰서에 따라 징수결정하고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남북협력기금계정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총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납입필통지서를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2조(기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 등) 기금수탁관리자는 법, 영, 이 규정 및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한 사항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및 별지 생략〉

16.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제정 1999. 10. 27 통일부고시 제1999-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경제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교역과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3조에 규정된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경제협력사업”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말한다.
3. “위탁가공교역”이라 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부자재(설비를 포함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남한으로 반입하거나 또는 제3국에 수출하는 교역방식을 말한다.
4. “교역대상물품 반출자금대출”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정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에서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를 제외한 교역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용자를 말한다.
5. “교역대상물품 반입자금대출”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정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용자를 말한다.

6.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대출”이라 함은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를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용자를 말한다.
7. “제3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국가·지역 등을 말한다.
8.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9. “금융기관”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기관과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10. “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제 3 조(지원대상) ①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남한주민으로 한다.

② 반출·반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남북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에 따라 교역을 진행중인 남한주민으로 한다. 다만, 교역대상물품 반출·반입자금대출은 대출신청 직전년도에 물품 반출 또는 반입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한다.

제 4 조(우선지원대상) 제3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지원대상으로 한다.

1. 중소기업자
2. 교역당사자간 직접계약방식으로 교역을 시행하는 자
3.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하는 의식주·보건관련 물품을 반출하는 자
4. 농작물 계약재배를 위한 종자 및 농자재를 반출하고 이에 따른 농작물을 반입하는 자. 다만,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5. 유흥산업설비를 반출하여 위탁가공교역을 시행하는 자
6. 농업 및 어업분야에서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
7. 물류비 절감 등 경협여건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

제5조(지원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현지법인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위반으로 인하여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만, 통일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
 - 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나. 대외무역법
 - 다. 관세법
 - 라. 외국환거래법
 - 마. 기타 전 각목에서 정하지 않은 대외거래·외국환관련 법령
3. 기금에서 지원된 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있는 자
4.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대상자, 다만 남북경제협력 추진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금융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이 인

정한 경우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

5. [별표 1]에서 정한 대출제한기업에 해당하는 자. 다만, 경제교류협력사업 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승인을 얻어 예외취급할 수 있다.
6.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의 경우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7. 본기금 이외의 금융자금을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

제2장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제6조(대출비율) 경제협력사업자금은 경제협력사업 시행에 있어서 남한 주민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대출할 수 있다. 다만, 대출금은 소요자금에서 기금지원방침 결정전에 자기자금이나 북한 또는 제3국 금융기관의 융자 등으로 조달한 투자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대출형식) 대출은 증서대출로 한다. 다만, 분할집행되는 경우에는 최종집행시까지 어음대출로 할 수 있다.

제8조(대출표시통화) ① 대출표시통화는 원화로 한다.

② 지원대상사업 계약서의 표시통화와 대출표시통화가 서로 다를 경우 원화환산은 대출승인신청 직전영업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제9조(회수통화등) 대출금 및 이자는 당해 대출표시통화로 받는다.

제10조(이자율 및 이자징수방법) ① 대출이자율은 연 6%로 한다.

②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에는 연 15%의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한다.

③ 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출금 상환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의 대출이자율은 이미 적용중인 대출이자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이자는 매 6월단위로 후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집행 등

의 경우에는 선취할 수 있다.

제11조(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7년 이내로 한다.

제12조(상환방법) 대출금은 연 2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제13조(담보) ① 채권보전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등 필요한 담보를 취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담보 이외에 필요한 경우 연금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제14조(지원방침의 유효기간) ① 지원방침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6월로 한다. 다만, 대상거래의 성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내에 대출금이 집행되지 아니하면 지원방침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전에 연장신청이 있고 그 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방침 통지를 받은 자의 취소신청이 있으면 지원방침은 그 신청일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제 3 장 반출·반입자금대출

제 1 절 교역대상물품 반출·반입자금대출

제15조(대출비율) ① 교역대상물품 반출·반입자금대출은 교역대상물품 반출·반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소요비용에 있어서 계약재배에 의한 농작물 반입의 경우에는 계약재배를 위한 종자와 농자재 반출비용을 포함한다.

제16조(이자율 및 이자징수방법) ① 대출이자율은 연 6%로 한다.

②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에는 연 15%의 지연 배상금률을 적용한다.

③ 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출금 상환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의 대출이자율은 이미 적용중인 대출이자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이자는 매1월 단위로 후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반출입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이자받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대출기간) ① 교역대상물품 반출자금의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최종 물품대금 결제일에 1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반출대금이 대응물자로 상환되는 경우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대응물자 반입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역 당사자간의 인도기일 연장의 합의가 있는 경우, 반출자에게 귀책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기타 당해 거래의 성격 및 국제거래 관행에 비추어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반출자의 신청을 받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역대상물품 반입자금의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내에서 최종교역물품 반입대금 결제일에 3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제18조(상환방법) 교역대상물품 반출·반입 자금의 상환은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의 방법에 의한다.

제19조(기타 대출조건) 기타 대출조건에 대하여는 제7조 내지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 2 절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대출

제20조(대출비율) ①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은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및 설비 반출거래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소요비용은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1. 원부자재의 구입 및 운송비
2. 설비의 구입·포장·운송 및 현지조립·설치비
3. 유희산업설비 반출의 경우 제2호와 설비의 성능검사 및 해체·보수비

제21조(대출기간) ①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의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내에서 최종 위탁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 반입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의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내에서 최종 설비반출대금 결제일에 1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설비반출대금이 대응물자로 상환되는 경우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대응물자 반입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역당사자간의 위탁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 인도기일 연장의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당해 거래의 성격 및 국제거래 관행에 비추어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반출자의 신청을 받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상환방법) 대출금의 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제23조(기타 대출조건) 기타 대출조건에 대하여는 제7조 내지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제3장 보 칙

제24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및 반출·반입자금대출의 대출비율, 이자율 및 지연배상금률, 대출기간 등을 달리할 수 있다.

제25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생략〉

17.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
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 형 목

18.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 관한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경제교류·협력

제1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②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③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 교류·협력 당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

④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

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⑤ 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

⑥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⑦ 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⑧ 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⑨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⑩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⑪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⑫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⑬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제2 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②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① 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②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교류·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③ 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④ 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⑤ 남북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⑦ 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⑧ 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방법, 통과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 ① 남과 북은 빠른 시일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 협력을 실시한다.
- ②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 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③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 ④ 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 ⑤ 남과 북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5 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 ①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 ②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6 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7 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8 조 이 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 부분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제9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①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자료와 목록 등 정보 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②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③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종단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④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전시회를 진행한다.

⑤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② 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 대로 이용하여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이용할 수 있다.

③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 ④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상대측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하고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⑤ 남과 북을 왕래하는 인원들은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한 범위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왕래와 방문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 ⑦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 ⑧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 ①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 ②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이 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15조 남과 북은 흠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① 흠어진 가족·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단체들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② 남과 북은 흠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절차에 따라 실현한다.

③ 남과 북은 흠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 면회소 설치문제를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협의·해결하도록 한다.

④ 남과 북은 흠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⑤ 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 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흠어진 가족·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흠어진 가족·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보장한다.

제18조 이 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한다.

제 4 장 수정·발효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0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 쌍방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철폐문제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19. 남북교류·협력 공동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합의서

1992년 5월 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2조에 따라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남과 북은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쌍방이 합의하여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 ④ 쌍방은 공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 ⑤ 수행원은 각기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⑥ 쌍방은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를 이행한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기타 세부 사항을 협의·실천한다.
-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실무협의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 3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서울, 평양 그리고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 ⑤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교류·협력 당사자, 해당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 ⑥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⑦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 공동위원장들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문건은 쌍방이 합의하여 총리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실무협의회들의 회의 합의사항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상 담 안 내

남북교역에 관한 문의·상담은 통일부(교역과)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의 상담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일부(교역과)

- ▶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 ▶ 전 화 : 02)722-8201, 722-8911, 736-7205, 3703-2367
- ▶ F A X : 02)722-8202
- ▶ 홈페이지 : www.unikorea.go.k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대북위탁가공교역지원센터)

- ▶ 주 소 : (137-170) 서울 서초구 염곡동 300-9
- ▶ 전 화 : 02)3460-7417~9
- ▶ F A X : 02)3460-7938
- ▶ 홈페이지 : www.kotra.or.kr

☛ 중소기업진흥공단(남북협력지원센터)

- ▶ 주 소 : (150-71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 ▶ 전 화 : 02)769-6861~5
- ▶ F A X : 02)769-6866
- ▶ 홈페이지 : www.bizonk.or.kr

▶ 지방상담장구

구 분	위 지	전 화
부 산 지 부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051)630-7400
울 산 지 부	울산시 남구 무거동	052)277-3283
대구·경북지부	대구시 수성구 수성 2가	053)740-1100
인 천 지 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032)450-0500
광주·전남지부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062)600-3000
대전·충남지부	대전시 유성구 장동	042)866-0114
경 기 지 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031)220-0900
의정부지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031)878-0747/8
충 북 지 부	충북 청주시 송정동	043)279-6800
전 북 지 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063)213-2130
경 남 지 부	경남 창원시 용호동	055)269-5800
강 원 지 부	강원도 춘천시 중앙동 1가	033)256-9611/3
강릉지부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033)646-9967/8
제주지부	제주도 제주시 아도2동	064)751-2055/7

▶ 한국무역협회(남북교역팀)

- ▶ 주 소 : (135-729)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7층
- ▶ 전 화 : 02)6000-5243~4
- ▶ F A X : 02)6000-5237
- ▶ 홈페이지 : www.kotis.net
- ▶ 지방상담장구

구 분	위 지	전 화
강 원 지 부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033)256-3067~8
경 기 지 부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031)221-7781~3
경 남 지 부	경남 창원시 용호동	065)282-4115~6
광주·전남지부	광주시 우산동	062)943-9400~3
대구·경북지부	대구시 신천동	053)753-7531~3
대전·충남지부	대전시 장동	042)864-4620~2
부 산 지 부	부산시 중앙동	051)462-5166~9
인 천 지 부	인천시 주안동	032)420-0011~3
전 북 지 부	전북 전주시 금암동	063)277-6861~2
충 북 지 부	충북 청주시 운천동	043)271-1647~8
북 경 지 부	충북북경	86-10)6505-2671~3

* 남북교역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안내책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상담장구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남북교역실무안내

2000년 11월 8일 인쇄

2000년 11월 11일 발행

발행처 : 통일부 교류협력국 교역과

TEL. 02)722-8911, 02)736-7205

FAX. 02)722-8202

인쇄처 : 삼일문화정보(주)

TEL. 02)2277-7122

FAX. 02)2277-7123

【비매품】

